

# 희망복지자원맵



아름다운 도시, 살고 싶은 수영  
행복도시, 수영에서 살고 싶습니다.

## Contents

### 희망복지 자원 맵 \_ 5

- 희망복지자원 맵이란 \_6
- 규정소개 \_8
- 2021 규정비전 \_10

###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업무안내 \_11

-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_12
- 수영구 복지통장 \_36
- 수영구 민관협력체  
명예사회복지공무원 \_37
- 복지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신고체계 구축 \_38
- 수영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 \_39
- 수영아이네트워크 \_42
- 드림스타트 \_43
- 방문형 서비스 사업 \_44
- 긴급지원사업 \_45
-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 지원사업 \_46
- 공공부문 사례관리사업 \_47
- 통합사례관리사업 개요 \_48
- 통합사례관리대상자 지원을 위한  
공공/민간서비스 \_49

### 기초생활보장 \_51

- 기초생활보장제도 안내 \_52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지원내용 \_53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감면혜택 \_56
- 저소득층 통신요금 감면제도 \_57
- 부산형 기초보장제도 안내 \_58

### 저소득 주민복지 \_59

- 주거안정지원사업 \_60
-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_63
- 가사간병방문도우미사업 \_71
- 법률홈닥터 \_73

### 자활·장애인 \_75

- 자활근로사업 \_76
- 희망키움통장 I \_78
- 희망키움통장 II · 내일키움통장 \_79
- 청년희망키움통장 · 청년저축계좌 \_80
- 고용안정사업 \_81
- 장애인복지사업 \_83
-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_85
- 장애인 사회생활 및 자립지원 \_87
- 장애인 자동차 이용 편의 지원 \_92
- 수영구 장애인전담 민관협의체 \_94

### 노인·영유아·여성·보건 \_95

- 기초연금 \_96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 \_97
-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돌봄사업 \_99
- 독거노인스마트안부알리미서비스 \_100
- 노인의료복지시설 입소 \_101
- 노인기타사업 \_102
- 아동복지사업 \_103
- 출산장려정책 \_108
- 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 \_114
-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_116
- 방문건강관리사업 \_117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_118
- 보건사업 \_119

### 복지시설 및 사업안내 \_123

- 수영구노인복지관 \_124
- 광안노인복지관 \_127
- 상락정배산실버빌 \_130
- 성분도어버이집 \_132
- 남천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_134
- 수영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_136
- 수영구 육아종합지원센터 \_138
- 수영구드림스타트센터 \_140
- 수영구청소년문화의집 \_142
- 수영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_145
- 수영구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_147
- 동산원 \_149

- (사)부산시 수영구장애인협회 \_152
- 수영구 장애인복지관 \_154
- 컴넷하우스 \_156
- 수영구보건소 \_159
- 부산종합사회복지관 \_167
- 홀트수영종합사회복지 \_169
- 수영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  
지원센터 \_171
- 부산수영지역자활센터 \_174
- 수영구자원봉사센터 \_178

### 시설 및 프로그램 안내 \_181

- 공공기관 \_182
- 보건의료기관 \_183
- 노인시설 \_192
- 아동시설 \_195
- 청소년시설 \_199
- 장애인시설 \_200

### 기관 주소록 \_207

- 사회복지법인 \_208
- 사회복지시설 \_209
- 노인복지시설 \_211
- 아동복지시설 \_217
- 장애인복지시설 \_221
- 복지관련문의 창구안내 \_223



# 아름다운 도시 행복한 수영



쉽고 한 눈에 보는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안내와  
맞춤형 서비스 제공으로 주민 여러분께  
행복을 전달해 드립니다.



## 희망복지 자원맵

- 희망복지자원 맵이란 \_6
- 규정소개 \_8
- 2021 규정비전 \_10





## 희망복지 자원 맵이란?

### 희망복지 자원 맵이란?

주민의 다양한 복지 수요를 반영하여 폭 넓은 서비스를 한눈에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는 “복지 자원 종합 안내서”입니다.  
우리 주변의 도움이 필요한 주민뿐만 아니라 모든 수영구 주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주요 복지시책 및 서비스와 관내 복지시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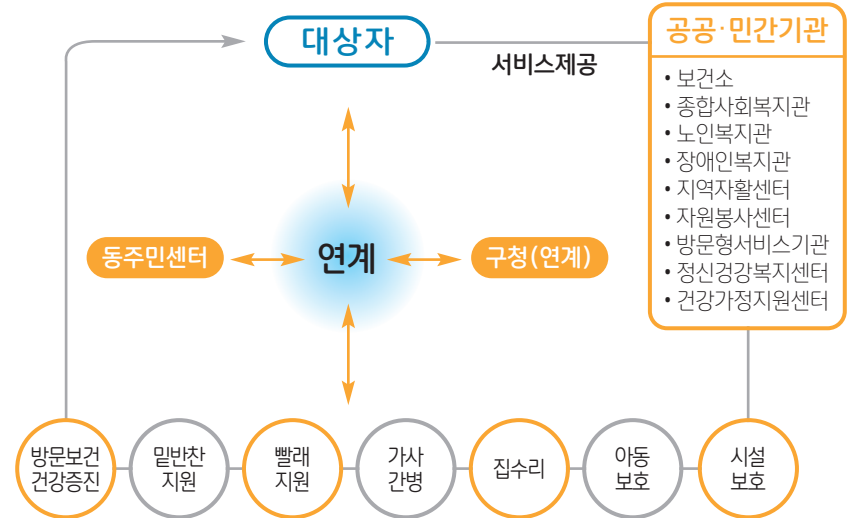
- ★ 주민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수요자 중심의 1:1 맞춤 서비스 지원
- ★ 민·관 협력으로 중복 및 누락서비스를 방지하여 빈틈없는 복지서비스 제공
- ★ 동행정복지센터 및 구청의 희망복지 지원단 설치로 효과적 서비스 제공

### 서비스 전달체계는 어떻게 되는지?

가까운 동 행정복지센터나 구청 복지정책과를 방문하세요.  
수요자 중심의 원스톱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 수영구 희망복지 자원 연계망 구축



“ 주민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수요자 중심의 1:1 맞춤서비스를 지원하게 됩니다. ”

공공 및 민간의 복지서비스에 대해 분야별 공급자들을  
서비스 대상별 연계하여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주민여러분의 든든한 벗이 되겠습니다.

## 수영구 희망복지지원 개편내용

구 청	동 행정복지센터
<p>각종 주민생활서비스 업무를 통합하여 희망복지지원단을 설치하고 복지기획·통합조사·서비스연계 등 복지기능이 강화됩니다.</p>	<p>동을 지역의 중심기관으로 하여 맞춤형 복지팀을 구성 하고 찾아가는 서비스, 복지사각지대 발굴, 사례관리, 민관협력 활성화를 통해 구민 중심의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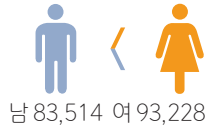
**구정소개**

**기본 현황 | 지역특성 |**

- 삼포지향(강, 산, 바다)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춘 전형적인 주택밀집지역
- 광안리해수욕장, 광안대교, 민락수변공원 등의 자원을 지닌 해양관광도시
- 좌수영성지, 25의용사, 수영야류 등 유·무형 문화재가 많은 역사와 충절의 고장
- KBS·MBC 소재 및 지하철 2·3호선이 통과하는 문화와 교통의 요충지

**| 일반현황 |**

인구 **84,460** 세대  
**176,742** 명



**면적 | 10.216km<sup>2</sup> 부산시의 1.3%**

상업지역 0.630km<sup>2</sup>(6.16%) 준주거지역 1.039km<sup>2</sup>(10.17%)  
주거지역 5.640km<sup>2</sup>(55.21%) 준공업지역 0.100km<sup>2</sup>(0.980%)  
녹지지역 2.805km<sup>2</sup>(27.45%) 미 지 정 0.002km<sup>2</sup>(0.030%)



**주택 | 81,601 호**

단독주택 22,486호(27.5%)  
아파트 37,360호(45.8%)  
다세대·연립 21,192호(26%)  
기타 563호(0.7%)

**기반 시설**

도로 156.6km  
자전거도로 9.44km  
지하철 5.8km  
하수도 355km

**주요 시설**

경로당 87개소  
어린이집 70개소  
학교 21개소  
의료기관 309개소  
문화재 18점

**행정 조직**

조 직 3국 1실 1단 18과  
의회, 보건소, 도서관, 10동  
정 원 651명  
구 433, 의회 12, 보건소 56,  
도서관 18, 동 132

**2021년 재정운용**

- 적극적 예산 편성으로 주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재정 지출 확대
- 민선7기 주요사업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한 지속적 투자
- 건전하고 투명한 재정운영 및 안정적 세입확충 노력

**| 예산규모 | 예산총액 336,453 백만원(재정자립도 18.8%)**

구 분	2021년도	2020년도	증감(%)
계	336,453	315,207	6.74% 증가
일반회계	332,065	310,879	6.81% 증가
특별회계	4,388	4,328	1.38% 증가

**| 일반회계 |**

단위 : 백만원

세 입		세 출	
■ 지방세	49,537(12.66%)	■ 공공행정/안전	13,180(13.8%)
■ 세외수입	12,984(▲2.14%)	■ 문화관광/교육	10,199(10.5%)
■ 지방교부세	17,000(18.47%)	■ 환경	12,648(4.7%)
■ 조정교부금	36,636(▲0.07%)	■ 복지/보건	211,125(15.3%)
■ 국고보조금	152,962(17.52%)	■ 해양수산/산업	2,684 (▲15.5%)
■ 시비보조금	50,622( 4.83%)	■ 지역개발/교통	11,774(▲5.7%)
■ 보전수입등	12,324(▲49.03%)	■ 예비비/기타	70,455(▲12.6%)

**| 특별회계 | 4개사업 / 4,388백만원**

- 의료급여기금 420백만원, 지하수 491백만원
- 주차장 3,154백만원, 주거환경개선사업 323백만원

**| 기 금 | 지역발전사업기금 등 7개 기금 38,682백만원**

(\*'20. 대비 2,004백만원 감소)

- 지역발전사업기금 30,556, 평생학습관 건립기금 2,471, 사회복지기금 3,004, 양성평등기금 524, 식품진흥기금 414, 재난관리기금 1,018, 옥외광고발전기금 695

2021 구정비전

아름다운 도시 행복한 수영



#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업무안내

-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_12
- 수영구 복지통장 \_36
- 수영구 민관협력체 명예사회복지공무원 \_37
- 복지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신고체계 구축 \_38
- 수영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 \_39
- 수영아이네트워크 \_42
- 드림스타트 \_43
- 방문형 서비스 사업 \_44
- 긴급지원사업 \_45
-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 지원사업 \_46
- 공공부문 사례관리사업 \_47
- 통합사례관리사업 개요 \_48
- 통합사례관리대상자 지원을 위한 공공/민간서비스 \_4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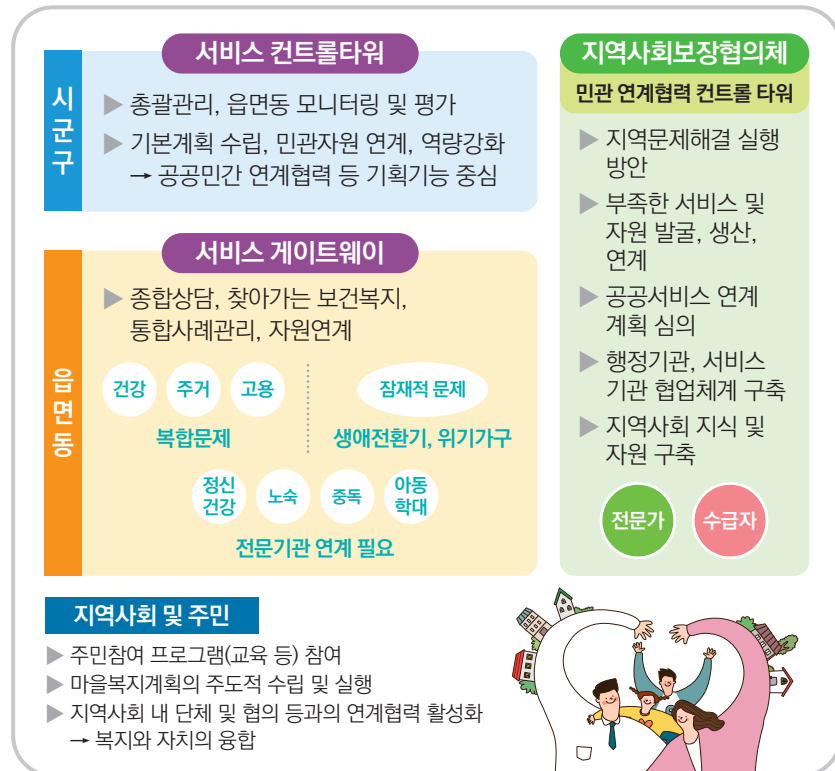
##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사업 안내

위기상황에 처해 있는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복지공무원이 직접 찾아가 이야기를 듣고 필요한 보건복지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

### | 주요사업 내용 |

- ★ 복지 종합상담
- ★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 ★ 통합사례관리
- ★ 복지+건강 기능 강화

### <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추진체계도 >



## 2021년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확대를 위한 노력

- **10개동 원스톱상담창구 운영**
  - 동별 찾아가는 보건복지팀 + 방문간호사 + 두루돌봄팀 [복지직1명·간호직1명] 운영
  - ※ 동행정복지센터가 특정 주민 중신이 아닌 모든 주민 대상 찾아가는 보건복지 상담 제공
- **전(全)동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의 균형적 발전을 위한 우수사례 공유**
  -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의 활성화를 위한 우수사례 전파 (동장, 복지사무장, 담당자, 협의체 등)
- **자원관리 및 자원연계 사업 추진**
  - 자원 총괄 시스템 구축을 통한 자원관리 및 자원연계 강화
- **모니터링, 컨설팅, 교육 등 정기적 피드백을 통해 역량 강화 및 내실 다지기**
  - 사회보장정보원 컨설팅, 역량강화를 위한 자체교육·워크숍 등
- **조례 제정(개정)을 통한 지역복지 사업 추진기반 마련**

- ★ 수영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제정(조례개정 2018.10)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공급원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맞게 정비 및 중복규정 삭제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업무 수행 및 효율성 제고
- ★ 저소득 생활안정지원사업 추진 (조례제정 2014.10) 총80백만원
  - 복지사각지대 생계·의료 등 지원 및 집수리 ▶ 구비 75백만원
  - 저장강박 및 무연고 사망자(쓰레기 처리 비용 및 자원봉사자 실비 지원 근거) 마련 : 10건 5백만원 (조례제정 2019.9)
- ★ 복지 통·반장 복지사각지대 발굴 수당 지급 (조례개정 2016.4)
  - 발굴한 복지사각지대가 공적급여 대상자로 선정 시 1건 3만원 ▶ 구비 6백만원
- ★ 솔루션위원회 및 슈퍼비전 실질적 운영을 위한 자문료 예산 편성
  - ▶ 구비6.2백만원
- ★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조례 제정 : 기부자의 예우 방안 마련(추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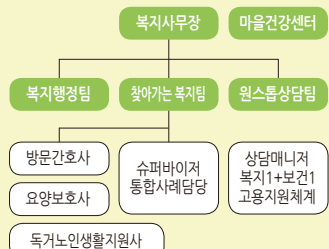
## 보건복지고용 원스톱 두루돌봄망 사업추진 체계도

### 보건복지고용 원스톱 두루 돌봄망 (수영구 통합돌봄서비스)

#### ▶위기가구 발굴 시스템

- 위기발굴 상시전화 콜! 특! "행복전화"
-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발굴 체계 구축
- 카카오플러스 정보제공친구 "복지톡톡"
- 8대 기관 MOU 체결(위기가구 발굴)

####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 ▶행정부지센터 (원스톱 상담 창구팀 구성)

- 전 등 추진(100%)
- 복지1 + 보건1
- 내·외부자원 목록화, 공유 안내
- 기관별 상담역량 강화 교육 실시
- 사례담당자, 공격적여 연계 및 방문상담, 사후관리
- 고용TF팀의 긴급체계 유지

#### 수영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협의체 (수영구 통합사회보장회의)

##### TF팀 협업 기관

희망복지지원단  
정신건강복지센터  
치매예방안심센터  
수영지역자활센터  
부산중합사회복지관  
홀트수영중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2(수영구, 광안)  
의료급여관리사  
방문형서비스기관  
건강가정지원센터  
동산원(아동시설)  
수영구장애인복지관

##### 아이네트워크

학교교육복지사  
청소년문화의집  
수영구드림스타트  
정신건강복지센터  
성가정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홀트수영중합사회복지관  
남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계

##### MOU 기관

남부경찰서  
부산복지전화네트워크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인구보건복지협회부산지회

##### 분야별 TF팀 회의, 워크숍, 단계별 교육, 논의

- 헬스케어 영양 죽 지원(환자, 퇴원환자 등)
- 재가활동을 위한 주거 개선 사업(마을지기와 협업)
- 1인 취창업 대상자 예방접종(인구보건협회 + 고용연계)
- 저장강박증 및 사망유동경리(조례 개정)
- 후원자 모임 수영아너스클럽 운영(자원관리)

## 우리동네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를 소개합니다.

- **남천1동** 홀로어르신 즐거운 요리체험 "오! 마이 쿠킹프렌즈"
- **남천2동** 고독사 예방을 위한 「할머니의 런치박스」
- **수영동** 코로나19 극복 식사 배달 서비스 「빨간 배달통」
- **망미1동** 우리동네 한지붕 또 봄 가족 사업 「내 마음이 꽃이요!」
- **망미2동** 깨끗함을 나누는 「구락마을 빨래방」
- **광안1동** 남성독거어르신들과 함께하는 「엄지할배들의 마음나누기」
- **광안2동** 어방골 「찾아가는 행복 팔순 생일 축하드려요!」
- **광안3동** 문화예술로 하나되는 「실버 예술놀이터」
- **광안4동** 호암골 행복돌봄사업 추진
- **민락동** 백산마을 다함께 희망찾기





## 사랑과 나눔을 실천하는 함께 사는 세상, ‘남치이 행복마을’

### 홀로어르신 즐거운 요리체험 “오! 마이 쿠킹프렌즈”

#### 1. 추진배경

- ▶ 협의체 위원과 홀로 어르신들이 공동체 활동에 참여 후 얻은 결과물을 이웃과 나눔을 통해 노년의 삶의 의미와 즐거움·소속감을 부여하여 정서적 고독 해소
- ▶ 최근 가족간 돌봄 기능약화에 따라 취약계층인 노인 1인가구가 소외되지 않도록 이웃이 이웃을 돌보고 살피는 촘촘한 지역돌봄 인적관계망 형성 및 고독사 예방률 제고

#### 2. 추진과정

- ▶ 2020. 8월 : 소규모 그룹 구성(헬퍼 1명, 여성 여성어르신 9명) 및 구성원들의 욕구파악을 통한 세부프로그램 설정
- ▶ 2020. 10~11월 : 사업 추진 및 프로그램 실시
- ▶ 2020. 11월 : 활동소감 공유 및 향후 계획 논의

#### 3. 세부내용

- ▶ 추진목적 : 이웃이 이웃을 서로 돌보는 인적관계망 형성을 통한 마을공동체 회복
- ▶ 추진기간 : 2020년 10월 ~ 11월
- ▶ 참여자 : 헬퍼(洞 협의체 위원 추인순), 관내 취약계층 여성 독거노인 9명
- ▶ 사업내용 : 매주 1회, 헬퍼 중심의 집단 요리체험 프로그램에 참여 후 완성한 음식을 주변 어려운 이웃세대와 나눔을 통해 친목한 마을공동체 관계 형성
- ▶ 총사업비 : 區 지원금 2,000천원 > 협의체 명의 집행
- ▶ 주 관 : 남천1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찾아가는 보건복지팀

#### 4. 주요성과, 효과, 지역의 변화, 대상자의 변화 등

- ▶ 코로나19로 가족·이웃들과의 소통이 소원해진 요즘, 집단 공동체활동 참여와 나눔을 통해 노년의 삶에 타인을 돌보며 봉사하는 즐거움과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장을 마련함
- ▶ 노인들 서로 간 취미활동을 공유하며 친구맺기를 통해 노인고독사 예방률 제고
- ▶ 민간협력을 통해 지역 돌봄체계를 마련하여 및 마을공동체 회복에 기여함

### 남천1동 복지 공동체 활동 현장 **이모저모**



홀로어르신 즐거운 요리체험 “오! 마이 쿠킹프렌즈”



홀로어르신 즐거운 요리체험  
“오! 마이 쿠킹프렌즈”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착한기금” 상품권 후원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오! 마이하우스” 성품 지원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빵빵데이” 가정방문 전달



반려식물 지원



“오! 마이하우스”  
- 방충망 설치지원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겨울이불” 성품 지원



“오! 마이 하우스”  
- 사랑의 집수리 현장”



독거어르신 생신잔치상  
차려드리기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푸짐한 찬(饌) 지원사업”



## 더불어 함께 있어 행복한 '바다누리마을'

### 고독사 예방을 위한 "할머니의 런치박스"

#### 1. 추진배경

- ▶ 이웃과의 소통기회 부족 및 공동체 생활 영위 미흡으로 인한 고독사 위험 노출
- ▶ 대부분의 독거노인은 사회적 역할 부재인 경우가 많아 노년의 삶의 질 저하

#### 2. 추진과정

- ▶ 2020. 7월 : 사업준비(할매 반찬봉사단 구성 및 나눔대상자 선정)
- ▶ 2020. 7월~11월 : 할매 반찬봉사단 발대식, 월1회 아동 맞춤 음식 지원, 요리강습 및 실습
- ▶ 2020. 11월 : 활동 마무리, 사후관리 및 모니터링

#### 3. 세부내용

- ▶ 추진기간 : 2020년 7월 ~ 11월(총13회)
- ▶ 참여자 : 11명(독거여성어르신 8명,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3명)
- ▶ 추진내용 : 어르신들의 "함께 모여 밑반찬, 요리강습, 아동·청소년 밑반찬 지원"
- ▶ 세부프로그램

연번	세부프로그램	주요내용	수행시기
1	오리엔테이션	오리엔테이션 및 요리배우기	2020.07.15.
2	1회차	런치박스(혼제오리겨자생채, 레몬크림새우, 잡채)	2020.07.22.
3	2회차	런치박스(수제미니햄버거, 과일, 음료)	2020.08.05.
4	3회차	런치박스(돈가스, 카레, 짜장, 샐러드)	2020.08.19.
5	4회차	간식지원(빵, 과일 도시락)	2020.09.02.
6	5회차	런치박스(갈비찜, 떡볶이)	2020.09.15.
7	6회차	런치박스(뉴욕핫도그, 김밥)	2020.10.07.
8	7회차	런치박스(소불고기, 뉴욕핫도그, 닭강정)	2020.10.19.
9	8회차	요리수업(고추잡채, 오징어순대 만들기), 마을 유희공간 꽃심기, 텃밭가꾸기	2020.10.20.
10	9회차	런치박스(고추잡채, 오므라이스, 감)	2020.11.04.
11	10회차	런치박스(유부초밥, 메추리알조림, 소시지야채볶음, 편빵)	2020.11.18.
12	김장키트로 김장담기	김장키트(배추 등 김장재료)만들기 및 키트전달	2020.12.08.

#### 4. 주요성과, 효과, 지역의 변화, 대상자의 변화 등

- ▶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라 사회적 고립감과 우울감에 노출되기 쉬운 홀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지역주민(협의체 위원)과 함께하는 활동을 통해 이웃과의 소통기회 증대 및 정서안정에 기여함
- ▶ 주민참여의 능동적인 복지사업 추진을 통해 포스트코로나 19시대에 대비하여 주민들의 힘으로 지역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주민 주도적 마을공동체 형성에 기여함

### 남천2동 찾아가는 복지 이모저모



복지사각지대 발굴 캠페인



설명절 선물꾸러미 나눔



이웃돕기 사업



경로당 방역사업



밑반찬 지원



희망 릴레이 식사 나눔



실버 텃밭 사업



정서지원 사업



고독사예방 및 안부확인 사업



한지붕 또 봉 가족 사업



방역물품 나눔



유자청나눔



## 이웃과 함께하는 나눔의 고장 ‘곰솔마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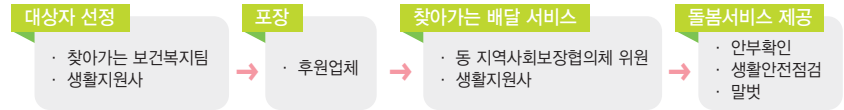
### 코로나19 극복 식사 배달 서비스 “빨간 배달통”

#### 1. 추진배경

- ▶ 코로나19로 후원업체의 식사 지원 중단에 따른 저소득 취약계층의 일상생활 유지 어려움 해결
- ▶ 찾아가는 식사 배달 서비스를 통한 안부확인, 생활안전점검 등 돌봄서비스 제공으로 고독사 예방

#### 2. 추진개요

- ▶ 추진기간 : 2020년 7월 이후 계속(사회적 거리두기 해지 시까지)
- ▶ 지원대상 : 관내 저소득 홀로 어르신
- ▶ 추진내용 : 찾아가는 식사 배달 서비스 지원



-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생활지원사)에서 식사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 홀로 어르신 대상자 파악 후 선정
- 후원업체별 식사 지원 당일 음식 포장 및 배달 준비
- 동 지역사회협의체 위원 및 생활지원사 찾아가는 배달 서비스 지원
- 배달 방문 시 안부확인, 생활안전점검, 말벗 등 돌봄서비스 제공

#### 3. 주요성과, 효과, 지역의 변화, 대상자의 변화 등

##### ▶ 지원실적

구분	누계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빨간 배달통」 참여 업체
지원 (건)	660	128	138	95	97	98	104	고래등, 모도리, 청조순두부, 엄지손칼국수, 전주명가 콩나물국밥, 화덕애한판 등

- ▶ 언론보도 : 국제신문 등 다수 게재
- ▶ 찾아가는 배달 서비스 지원으로 저소득 홀로 어르신들의 복지욕구에 대한 맞춤형 복지 서비스 제공
- ▶ 찾아가는 배달 서비스 제공과 더불어 안부확인, 말벗, 생활안전점검 등 돌봄서비스 제공으로 복지사각지대 해소 및 고독사 예방

### 수영동 찾아가는 복지 **이모저모**



코로나19 극복 식사 배달서비스 『빨간배달통』



수영동 민간협력 반찬나눔사업 『사랑가득饌(찬)』

『사랑이 꽃피는 곰솔블래터』



『행복 가득 전차레인지』 지원 사업

『따뜻한 손길 죽 나누기』



홀로어르신 장수사진 지원 사업 『당신의 오늘을, 찰칵』

우리동네 한지붕 또 봄 가족 『행복 빵빵 충전소』

긴급생계·의료지원 『도와쥐우 슈퍼맨』

보건복지서비스 업무안내  
수영구 찾아가는



## 이웃이 있어 행복한 ‘희망마을’

우리동네 한지붕 또 봄 가족 사업 **“내 마음이 꽃이요!”**

### 1. 추진배경

- ▶ 가족중심의 돌봄 기능 약화와 1인 가구 증가에 따라 고독사 예방을 위한 마을공동체 회복의 필요성 증가
- ▶ 지역주민 간 이웃관계망 형성을 통한 복지공동체 회복

### 2. 추진과정

- ▶ 2020. 8월 : 소규모 그룹 구성(헬퍼 2명, 독거중장년어르신10명)
- ▶ 2020. 8월 : 구성원의 욕구파악을 통한 세부프로그램 정하기
- ▶ 2020. 8~10월 : 프로그램 실시
- ▶ 2020. 10월 : 활동소감 공유 및 향후계획 논의

### 3. 세부내용

- ▶ 추진기간 : 2020년 8월 ~ 10월(총6회)
- ▶ 참여자 : 12명(독거여성어르신 10명, 협의체위원 포함 헬퍼 2명)
- ▶ 추진내용 : 헬퍼, 어르신의 “내 마음도 꽃이요~”
- ▶ 세부프로그램

연번	세부프로그램 및 주요내용	수행시기
1	오리엔테이션 및 베이커리 체험	2020.08.25.
2	꽃꽂이 체험 및 미니게익 제공	2020.09.15.
3	손소독제, 모기퇴치제, 스킨·로션 만들기 체험, 건강교육	2020.09.22.
4	치매예방 및 파트너 교육, 명절맞이 물품(김)제공	2020.09.29.
5	베이커리 만들기 체험	2020.10.20.
6	에센스·품 클렌징 만들기	2020.10.27.

### 4. 주요성과, 효과, 지역의 변화, 대상자의 변화 등

- ▶ 즐거운 여가활동 및 지역사회에서 이웃과 어울리는 기회를 통해 독거 중장년 어르신의 소외감 및 우울감 완화
- ▶ 정서 표현과 신체 활동으로 심신의 활력을 얻고 행복감 및 건강 증진

## 망미1동 찾아가는 복지 **이모저모**



「내 마음이 꽃이요!」(베이커리·꽃꽂이 체험, 손소독제·모기퇴치제·스킨로션만들기, 건강교육)



「내 마음이 꽃이요!」(에센스·폼클렌징만들기, 치매예방 및 파트너 교육)



「HAPPY HOUSE」(방충망 및 도배장판 등 집수리 지원사업)



삼계탕 나눔데이

머느리표 밀반찬

김장김치 나눔데이



## 사랑과 행복이 넘치는 활기찬 ‘구락마을’

2021년 깨끗함을 나누는 “구락마을 빨래방”

### 1. 운영배경

-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노인,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무료세탁 서비스를 지원하여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 2. 운영개요

- ▶ 운영기간 : 2021년 1월~12월 (12개월)
- ▶ 운영주체 : 망미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 ▶ 운영대상 : 기초수급 및 차상위계층 우선, 65세 이상 홀로어르신
- ▶ 운영시간 : 09:00 ~ 18:00 (월~금)
- ▶ 운영장비 : 세탁기(23kg용량) 1대, 건조기(19kg용량) 1대
- ▶ 이용가능 세탁물 : 이불빨래 우선, 커튼, 부피가 큰 세탁물 등  
(※ 오물 묻은 빨래, 운동화, 속옷은 제외되며 이불빨래의 경우 1회당 3장 이내로 한정함)

### 3. 참여 기관별 역할

-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 운영주체, 자원발굴, 필요시 수거 및 배달봉사
- ▶ 동 행정복지센터 : 사업 홍보 및 자원 발굴
- ▶ 수영지역자활센터 : 상주인력 지원
- ▶ 각 단체 : 거동불편 수요자 발생 시 빨래 수거 및 배달 등 운영지원

### 4. 주요성과, 효과, 지역의 변화, 대상자의 변화 등

- ▶ 거동이 불편한 취약계층의 생활환경 개선
- ▶ 빨래 수거 및 배달 지원을 통한 민관협력강화
- ▶ 복지사각지대 대상자 발굴

## 망미2동 찾아가는 복지 **이모저모**



취약계층 코로나19 극복  
간편식 지원



사랑의 집수리



토닥토닥 은빛동행



계절감치 나눔



홀로어르신 식사 지원



방충망 교체



1일 행복 산타



호국보훈의 달 태극기, 치린지원



구락마을 빨래방 운영



## 행복을 찾아가는 ‘엄지마을’

### 남성독거어르신들과 함께하는 “엄지할배들의 마음나누기”

#### 1. 추진배경

- ▶ 광안1동은 원룸 밀집 등 지역 특성상 독거노인가구가 지속적으로 증가
- ▶ 가족중심의 돌봄 기능 약화 및 1인 가구 증가에 따라 고독사 등 사회적 문제로 마을 공동체 회복 필요성 대두

#### 2. 추진개요

- ▶ 추진목적 : 이웃이 서로 돌보는 이웃관계망 형성을 통한 마을공동체 회복
- ▶ 사업기간 : 2020. 07 ~ 12월(6개월간)
- ▶ 주 관 : 광안1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찾아가는 복지전담팀
- ▶ 참 여 자 : 관내 남성 독거어르신 8명, 헬퍼(협의체 위원) 2명
- ▶ 사업내용 : 남성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막걸리 만들기, 치유의 숲 체험 등 다양한 문화체험 프로그램 진행

#### 3. 추진결과

- ▶ 총 8회차 사업 추진 완료

회차	일시	추진내용	장 소
1	2020.07.30	식사(레스토랑)하며 자기소개, 친밀감 쌓기	예옴(광안동 소재)
2	2020.08.13	전통 막걸리 만들기 체험	복순도가(망미동 소재)
3	2020.09.21	가족공예 체험	바이두름가족공예학원
4	2020.10.29	치유의 숲 힐링나들이	기장 치유의 숲
5	2020.11.05	영화관람 (담보)	CGV센텀점
6	2020.11.26	어묵만들기 체험	삼진어묵 체험관
7	2020.12.11	건강 요구르트 만들기	개별체험(자택)
8	2020.12.22	엄지할배 기념사진 퍼즐맞추기	개별체험(자택)

#### 4. 주요성과, 효과, 지역의 변화, 대상자의 변화 등

- ▶ 이웃이 이웃을 돌보는 돌봄 문화 확산
- ▶ 주민공동체 회복을 통한 고독사 예방 및 지역사회안전망 강화
- ▶ 참여자들 간 전화번호 교환을 통한 이웃관계망 형성

## 광안1동 찾아가는 복지 이모저모



### “정과 사랑이 넘치는 엄지마을 이모저모”



남성독거어르신과 함께하는 『엄지할배들의 마음나누기』



저소득 대상자 이불발래 지원  
『엄지마을 적적 빨래방』



지역아동센터 아동  
『구러기 간식 보따리』지원



계절김치 나눔



취약계층 여름이불 지원



추석 맞이 『사랑의선물』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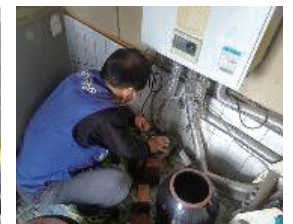
엄지마을 「반찬만든 DAY」



저소득 어르신 방한용품지원  
『따뜻한 온기 나눔』



찾아가는 방문상담  
『두루돌봄팀 운영』



우리동네 만들수리공  
『마을지기』사업 운영



## 정겹고 살가운 함께하는 이웃사촌 **'어방골'**

### 어방골 "찾아가는 행복 팔순 생일 축하드려요!"

#### 1. 추진배경

- ▶ 핵가족화 및 가족관계해체로 홀로 생일을 맞게 되는 어르신들이 많음
- ▶ 무병장수를 기념할 수 있는 생일인 팔순을 맞으신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어르신들에게 가정방문하여 생신상을 차려드리며, 안부확인 및 지역사회의 온정 전달

#### 2. 추진과정

- ▶ 2020. 1. 2. : 찾아가는 행복 팔순 생일상 차려드려요 계획 수립
- ▶ 2020. 1. 14. : 1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월례회 안건 상정 후 결의
  - 2020년 팔순을 맞으신 기초생활수급자 1인 세대수 확인
  - 생일날 가정방문하여 생일상 차리기 및 선물 전달 건의
  - 가정방문을 꺼리는 경우가 있을 때는 당사자가 원하는 장소에서 생일상 차려드리는 것 논의
  - 선물은 협의체에서 일괄적으로 정하는 것이 아닌, 당사자에게 직접 물어보고 구매할 것 건의
  - 소요예산 : 어방골 희망복지금 1,000천원(세대별 200천원 × 5회기) 집행 결정

#### 3. 세부내용

- ▶ 추진기간 : 2020년 1 ~ 12월(총 5회)
- ▶ 추진대상 : 2020년 팔순을 맞으신 기초생활수급자 홀로어르신 5세대
- ▶ 추진내용
  - 2020. 1. 2.자 기준 팔순을 맞으신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 1인가구 5세대 확인
  - 2020. 1.14.자 1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월례회를 통해 사업논의 및 진행방향 결정
  - 2020. 1. 16. / 2. 28. / 5. 4. / 8. 7. / 10. 14. 총 5회기 사업진행
  - 복지사무장이 생일 전 유선연락하여 사업 취지 및 장소, 원하시는 선물 등을 물어보고 대상자별 원하는 선물이 상이할 수 있어 최대 200천원 한도 내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함
  -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과 맞춤형복지팀 등 민(民)과 관(官)이 서로 협력하여 대상자가 원하는 선물(홍삼세트, 커피포트, 다리미, 이불 등) 확인부터 직접 구입 및 포장

#### 4. 주요성과, 효과, 지역의 변화, 대상자의 변화 등

- ▶ 홀로 보낼 수 있는 팔순 생신에 주민들이 함께 모여 축하해 드리면서 어르신들의 소외감 해소 및 지역사회의 따뜻한 온정 전달을 할 수 있었음
- ▶ 코로나19 관련 사회적·생활적 거리두기로 취약계층에 대한 관심이 적어질 수 있는 시기에 사무적이고 딱딱한 느낌이 아닌 살갑고 정겨운 지역사회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됨

## 광안2동 찾아가는 복지 **이모저모**



### 이웃과 함께하는 인정이 넘치는 어방골



어방골 안전지킴이  
"안전 사각지대 안심 쿵"



가인회·방위협의회  
"어르신 장수사진 전달"



광안2동 자생단체  
"사랑의 김장나눔 한마당"



어방골 「효나눔 사랑나눔」



어방골 「찾아가는 행복 팔순 생일 축하드려요!



실버 네일살롱  
"할매, 소녀가 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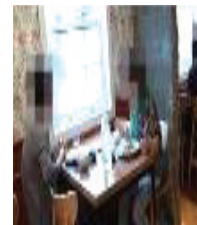
새마을부녀회  
"추석맞이 반찬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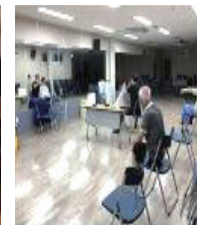
자유총연맹  
"건강한 여름나기, 삼계탕 나눔행사"



가인회  
"사랑의 밑반찬 지원"



아미가르 레스토랑  
"사랑의 양식"



헤어커트 재능기부  
"리치웰 이용원"



"함께하면 길이 있다!"  
"복지사각지대발굴 캠페인 추진"



한 지붕 또 뽕 가족  
"하나 보다 돌이"



사랑과 희망이 샘솟는  
**‘새미마을’**

문화예술로 하나되는 **“실버 예술놀이터”**

**1. 추진배경**

- ▶ 광안3동은 노인인구가 전체인구의 22%에 달하는 초고령사회로 그 비율이 점차 증가
- ▶ 취약계층 주민들이 즐길만한 여가생활 부족
- ▶ 새미예술공방을 주민이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공간으로 활성화

**2. 세부내용**

- ▶ 추진내용 : 민간 예술단체와 협력을 통해 문화예술 체험프로그램 운영
  - 이기화분, 석고방향제, 에코백, 천연향초, 티매트, 녹차수분크림 만들기 등
- ▶ 프로그램 개요

프로그램	실버 예술놀이터		
	1반	2반	3반
반 명	1반	2반	3반
추진기간	6. 15. ~ 7. 27.(매주 월)	6. 12. ~ 7. 31.(매주 금)	7. 8. ~ 7. 29.(매주 수)
추진횟수	7회	8회	4회
참가인원	10명	10명	10명
비 고	8월 이후 폭염 및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미 실시		

- ▶ 추진장소 : 새미예술공방(망미번영로16번나길 26)
- ▶ 추진대상 : 저소득 취약계층(장년 및 노인)
- ▶ 협력단체 : 모이다아트 협동조합

**3. 기대효과**

- ▶ 문화예술 체험을 통해 취약계층 주민들의 정서적 안정 도모
- ▶ 참여자 간 친목을 통한 이웃이 이웃을 돌보는 상호안전망 구축
- ▶ 지역예술단체 재능기부를 통한 무료강좌 개설로 봉사의 의미 확산

광안3동 찾아가는 복지지 **이모저모**



사랑과 희망이 샘솟는 새미마을



<새미 기쁜 희망기금> 발대식



경로당 위로방문



통합돌봄데이



사랑회 물김치 후원



어르신 식사 지원



<사랑의 거리 좁히기> 캠페인



실버예술놀이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반찬 후원



새미마을 행복장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김치 후원



주민자치위원회 야쿠르트 후원



익수종합건설 방충문 후원



광안 4동

우리 이웃은 우리가 돌보는  
**‘호암골’**

호암골 **“행복돌봄사업 추진”**

1. 추진배경

- ▶ 만65세이상 홀로가구의 복지욕구조사를 통하여 복지사각지대 발굴
- ▶ 복지욕구에 적합한 자원 및 서비스를 발굴·연계하여 지역사회 기반의 돌봄 체계 구축

2. 추진과정

- ▶ 기 간 : 2020년 4월 ~ 12월
- ▶ 추진대상 : 저소득 취약계층 만65세이상 홀로 어르신 164가구
- ▶ 주 관 : 광안4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단체
- ▶ 내 용
  - 조사표에 의한 생활실태, 건강상태 등 복지욕구 심층조사
  - 복지욕구 결과에 따른 단계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
  - 단체별 특화사업추진

3. 추진결과

-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
  - 행복담은 반찬쿠폰(매월 20가구), 영양가득 단팔죽 배달(매월 10가구)
  - ‘아이밝고 편해라~ LED 전등’ 설치(10가구), 코로나19 방역실시(53가구)
  - ‘호암골 블링블링 데이즈’ 이·미용염색서비스(10가구), 온수찜질기 지원(50가구)
  - ‘情을 품은 인견내의’ 지원(28가구), ‘초복맛이’삼계탕 지원(60가구)
- ▶ 새마을부녀회 : 온정가득 생신상(5가구)·情 담은 불고기 지원(50가구)
- ▶ 새마을문고협의회 : 설맞이 ‘1% 나눔’떡·한과세트 지원(30가구)
- ▶ 수영사랑회 : 호암골 정성담은 집밥(매월 1가구)·푸드마켓 동행서비스(매월 4가구)
- ▶ 가 인 회 : ‘뜨끈뜨끈 국·찌개’ 지원(매월2가구)
- ▶ 바르게살기위원회 : 시원한 여름나기 방충망 설치사업(10가구)
- ▶ 새마을지도자회 : ‘우리동네 산타가 왔어요’ 선물꾸러미 지원 사업(27가구)
- ▶ 한국자유총연맹 : ‘우리집 안전돌보미’ 소화기 및 이불 지원 사업(21가구)

4. 주요성과

- ▶ 복지욕구가 반영된 자원 배분 및 서비스 연계로 노년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 민·관이 협력하여 욕구에 맞는 자원을 개발하고,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주민 스스로 이웃사랑 실천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 제공

광안4동 찾아가는 복지 **이모저모**



아이 밝고 편해라~  
LED전등 설치 지원



온정가득 생신상 지원



코로나19 예방 활동 실시



어르신 시원한 여름나기  
방충망 지원사업



우리동네 한지붕 또뽕가족  
호암골이라 즐거워요~ 팡팡!!



온수찜질기 지원사업



우리동네 산타가 왔어요  
선물꾸러미 지원 사업



우리집 안전돌보미  
소화기&이불 지원사업



호암골 블링블링 데이즈  
어르신 이·미용염색서비스



성 베네딕도 수녀회 『국·반찬』  
지원 보고



홀로어르신 복지욕구조사



호암골 정성담은  
박고지 김밥 지원



초복맛이 삼계탕 지원



어르신 건강하세요!  
풍기인견 지원



설맞이 “1% 나눔”  
떡·한과세트 지원

보건복지서비스 업무안내  
수영구 찾아가는



다함께 희망을 찾아가는  
**‘백산마을’**

반짝반짝 LED 초인종 **“팅커벨”** 지원사업

**1. 추진배경**

- ▶ 최근 1인가구 증가와 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고독사 문제 증가
- ▶ 재난정보에 취약한 청각장애인 및 난청 노인에 대한 안전 확인 필요
- ▶ 이웃과 소통 및 교류를 통한 사회적 관계 형성 필요

**2. 추진과정**

- ▶ 추진기간 : 2020. 7~8월 (2개월간)
- ▶ 추진대상 : 30가구
  - 청각장애인 및 저소득어르신 중 귀가 잘 들리지 않는 가구
- ▶ 추진내용 : LED 초인종 설치를 통한 효율적인 안부확인

**3. 세부내용**

- ▶ 대상자 선정
  - 소득수준, 1인가구 여부, 청력 등 생활실태조사 후 우선 순위 선정
  - 저소득 청각장애인 149가구 전수조사 후 16가구 설치
  - 그 외 청력상실 추천가구 38가구 조사 후 14가구 설치
- ▶ 초인종 설치 및 안부 확인 실시

**4. 주요성과, 효과, 지역의 변화, 대상자의 변화 등**

- ▶ 부산일보, 국제신문 언론사 2곳 보도
- ▶ LED초인종 설치를 통한 효율적인 안부확인으로 행정력 감소
- ▶ 복지동장, 방문형서비스 기관 및 대상가구 체감 만족도 향상
- ▶ 코로나와 같은 재난상황에서 안전과 관련된 정보 및 물품의 신속한 전달

민락동 찾아가는 복지 **이모저모**



민락동 다함께 희망찾기 나눔 프로젝트



LED초인종 Tingkabel 지원



가족사랑 효이불 지원



사랑의 김장김치 나누기



추석맞이 복꾸러미 지원



마을지기사무소 집수리 지원



백산마을 희망도시락 지원



전입세대 이삿떡 지원



수험생 격려선물 지원



우리의 진달래 사업



## 수영구 복지통장

○ 우리구 현황 : 10개동 227명 복지통장

○ 복지통장의 역할

- ▶ 복지사각지대 발굴 도우미
  - 긴급 위기상황 발생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구
  - 장애, 질병 등으로 생활고를 겪고 있는 가구
  - 기타 사유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구
- ▶ 민간사회복지 활동가
  - 복지시책, 정책홍보, 행정과 주민을 잇는 연결다리 역할
  - 위기가정 1:1 결연으로 정서적 지지 (멘토링제)
  - 지역주민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 연계·지원

### ★ 복지통장 복지도우미 활동비 지원 ◀ 조례개정, 구비확보

- ▶ 통장(반장)이 발굴한 복지사각지대 대상자가 신청조사를 통해 **법정저소득층, 사례관리대상자 등으로 결정**되었을 경우 활동비 지급
  - 1건 3만원 → '21년 예산 600만원
- ▶ 복지통장의 역할증대에 따른 보상강화로 사기진작 및 책임감 고취
- ▶ 복지사각지대 등 위기가구 선제적 발굴의 지역복지기반 확충



## 수영구 민관협력 명예사회복지공무원

○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이란?

저출산 고령화 등사회구조의 변화로 새로운 사회적 위험 증가하고 가족해체로 고립된 위기가구가 발생함에 따라 위기상황에 선제적·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복지위기가구를 발굴하고 지원하는 무보수·명예직 지역주민

○ 운영현황

- ▶ 우리구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사업 시행 : 2018년 12월 ~ 지속 추진
  - 10개동 명예사회복지공무원 799명 (지속적 확대 추진)

○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역할 및 구성

- ▶ 역할 : 도움이 필요한 위기가구에 대한 적극 제보,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의 의미와 참여에 대한 홍보와 공유 등의 역할 수행
  - 혼자 사는 저소득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 방문 보호활동
  - 취약계층 자살예방활동 및 자살 고위험군 발견·신고
  - 전기·수도·가스·난방 등 공급중단 가구 신고
- ▶ 구성
  -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복지통장, 동 주민단체 회원, 자원봉사자, 생활업종 종사자, 지원대상 신고의무자 등
    - 생활업종 종사자 : 공동주택 관리자, 집배원, 가스검침원, 배달업종 종사자, 부동산 중개인, 금융기관 종사자, 소매, 음식, 숙박, 서비스업 종사자 등
    - 지원대상 신고의무자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방문형서비스 제공자, 소방 구급대원, 교사 등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을 찾습니다.”





## 수영구 복지위기 가구 발굴을 위한 신고체계 구축

### 마음 따뜻한 전화 한 통 「수영구 행복 전화」

- ▶ 추진내용 : 위기가구 상시 발굴 및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모바일 소통 창구
- ▶ 추진체계
  - 복지위기가구, 복지사각지대 가구 등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건강문제, 사회적 고립 등으로 인해 도움이 필요한 가구 발굴 후 신고
  - 접수된 내용을 신속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즉시방문, 정보제공

#### 복지사각지대 발굴

· 위기상황 발생시  
전화, 문자, 카카오톡 신고 010-6608-4421  
(평일 오전9시~오후6시)

#### 희망복지지원계

· 전화, 문자 접수  
· 전화 상담 및 욕구 파악  
· 상담결과 행복센터 · 관련기관 연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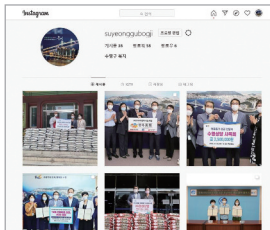
#### 동 행정복지센터 (찾아가는 복지전담팀)

· 대상자 가정방문  
· 복지서비스 연계 및 맞춤형 서비스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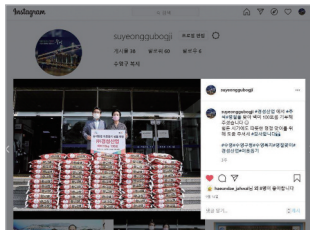


## 복지정보 공유를 위한 「수영구 복지 인스타그램」 운영

- 주민과 더불어 만들어 가는 복지수영 조성
-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는 우리 구 복지시책 홍보 창구
- 아이디 : suyeonggubogji



수영구 복지 인스타그램



인스타그램 관리

## 수영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 ○ 목적

- 민관협력의 구심점으로서 지역사회보호체계 구축 · 운영
- 수요자 중심의 통합적 사회보장급여 제공 기반 마련
- 지역사회 내 사회보장급여 제공기관 · 법인 · 단체 · 시설 간 연계 · 협력으로 지역 복지자원의 효율적 활용체계 조성
- 민관협력을 통해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강화를 위해 동 단위 주민네트워크 조직

### ○ 법적근거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 ○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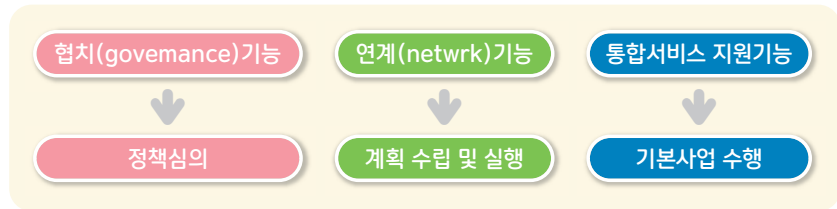




○ 역할



○ 주요기능



「수요자 중심의 통합적 서비스 제공」

주요기능	내 용
협치기능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과정·평가 등 지역사회보장의 주요사항에 대하여 민간과 공공이 협의하여 심의·자문
연계기능	사회보장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계 기관·법인·단체 시설과 연계·협력 강화
통합기능	협의체 내 각 분과 간 통합 및 조정역할을 수행하고 지역주민의 욕구를 반영한 통합적 서비스 제공 체계지원, 통합서비스제공을 위해 기존의 보건복지뿐만 아니라 고용·주거·교육·문화·환경 등 다양한 영역과 연계

○ 주요추진사업

▶ 민관협력 공동기획사업 추진

**정(情)가득 명절 선물꾸러미 지원 사업**

- 기간: 설명절 지원
- 대상: 2020.7.16.~8.4. - 저소득취약계층 75세대
- 내용: 라면 죽 및 국 등 생필품으로 구성된 선물꾸러미 지원
- 예산: 3,750천원

**코로나19 특화사업 「방곡!, 생활, 힘내세요.」**

- 기간: 2020.2월~11월
- 대상: 동 협의체 특화 사업 지원
- 내용: 지역특성을 반영한 취약계층 지원 사업 - 고독사 및 복지사각 지대 예방·발굴·지원 사업
- 예산: 10,000천원

**동 협의체 특화사업비 지원**

- 기간: 2020.10.1.~11.30.
- 대상: 5개 추진전략 및 30개 세부사업
- 내용: 연차별 시행계획 개요 - 세부사업 내용 - 재정·행정 계획 - 모니터링 및 평가 계획
- 예산: 1,800천원

**제4기 지역사회 보장계획 '21년도 연차별 계획 수립**

- 기간: 2020.10.1.~11.30.
- 대상: 5개 추진전략 및 30개 세부사업
- 내용: 연차별 시행계획 개요 - 세부사업 내용 - 재정·행정 계획 - 모니터링 및 평가 계획
- 예산: 1,800천원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연계 협의체 활성화 지원 사업

**수영구 똑딱이 봉사단 접수리 사업**

- 기간: 2020.2.17.~3.31.
- 대상: 취약계층 2세대
- 내용: 썩크대, 도배, 장판, 방수, 안전바 설치 등 - 수영구 똑딱이봉사단 회원 (새마을지도자 협의체 협력)
- 예산: 3,000천원
- 지정기탁 (부산은행)

**폭염대비 취약계층 선풍기 지원 사업**

- 일시: 2020.6.17.~7.17.
- 대상: 500세대
- 내용: 저소득취약계층 (중위소득 80% 이하), 선풍기가 없거나 고장난 세대
- 예산: 27,500천원
- 지정기탁 (희망다리농기사업)

**주민복지 향상을 위한 민락수변공원 환경개선사업**

- 기간: 220.8.1.~8.31.
- 대상: 민락수변공원 일원
- 내용: 안전사고, 쓰레기 무단투기 - 소음민원, 거리투기 유도 활동 - 활동시간: 20:00 ~ (익일) 02:00 ~ 일6시간 근무
- 예산: 30,000천원
- 지정기탁 (부산은행)

**코로나19극복 추석명절 상품지원사업**

- 기간: 2020.9.3.~9.29
- 대상: 1,200세대
- 내용: 온누리상품권 600세대 - 유산군세트 600세대 ☞ 유산군 5팩, 비타민C 3팩
- 예산: 60,000천원
- 지정기탁 (희망다리농기사업)

문의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간사 ☎ 610-4428

보건복지서비스 업무안내  
수영구 찾아가는



## 수영 I(아이)네트워크

## 드림스타트(Dream Start)

### ○ 수영 I 네트워크란 ?

수영구에서 아동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학교) 모임으로, 각 기관별로 수행하는 사업들에 대한 정보공유와 사례회의, 공동사업 추진 등을 통해 수영구 지역 복지 증진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표로 만들어진 민간협력네트워크

### ○ 운영체계

- 홀수달 정례회의
- 25개 기관 3개 분과로 구성 (중심기관 : 수영구 청소년 문화의 집)
- 협력사업 : 지역주민 역량교육, 가족캠프, 사례발표회, 청소년문화제, 민간통합사례회의 등

교육복지		문화홍보		사례지원	
1	수영중학교	1	수영구청(복지기획계)	1	수영구청(희망복지지원계)
2	동산원	2	수영구청(아동청소년계)	2	수영구 드림스타트센터
3	동수영중학교	3	다함께성가정상담센터	3	수영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4	동아중학교	4	수영구자원봉사센터	4	수영구청청소년상담복지센터
5	망미초등학교	5	인구보건협회성폭력상담소	5	부산가정위탁지원센터
6	수영초등학교	6	홀트수영종합사회복지관	6	부산여자단기청소년쉼터
7	한바다중학교	7	수영구정신건강복지센터	7	수영지역아동센터
8	해운대교육지원청	8	청소년 문화의 집	8	남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계
				9	수영구청애인복지관



수영아이네트워크 회의



민간협력기관 사업 추진



전마스크 만들기

### ○ 드림스타트란?

모든 아동은 공평한 양육여건과 출발기회를 보장받으며 성장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에 드림스타트는 취약계층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고 행복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지원하는 아동복지 사업입니다.

### ○ 서비스 대상

- 0세(임산부) ~만12세(초등학생 이하) 아동 및 가족  
 ※ 수영구 거주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정, 보호대상한부모가정 (조손가정 포함), 학대 및 성폭력피해 아동 등에 대한 우선지원 원칙

### ○ 서비스 내용

지역자원과 연계한 맞춤형 서비스(보건·복지·보육(교육))제공, 주기적 재사정 및 지속적인 모니터링 등 통합사례관리를 실시합니다.

#### ▶ 서비스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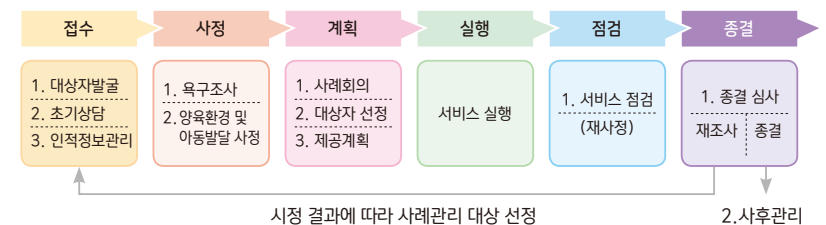
- 기본서비스** : 통합사례관리의 기초로 모든 드림스타트사례관리 대상에게 직접 제공  
**필수서비스** : 아동발달 영역별(신체/건강, 인지/언어, 정서/행동, 부모/가족) 목표달성을 위한 필수적인 서비스

- 아 동 - 건강검진 등 8종
- 임산부 - 산전 산후검진 등 2종
- 부 모 - 자녀발달 및 양육교육

**맞춤 서비스** : 사정 결과에 따라 대상자별로 지원하는 서비스

- ▶ 위치 : 수영구 수미로 53(망미동) / 전화 (051)610-4480~4  
 /http://www.dreamstart.go.kr/bssy

#### ▶ 드림스타트 통합사례관리 과정





## 방문형서비스사업

## 긴급지원사업

방문형서비스는 복지대상자의 여건과 생활상의 여러 욕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서비스 제공자가 찾아가서 돌봄·의료(보건)상담·정보제공 등을 수행하는 활동

### ○ 복지동장·협의체 위원과 함께하는 2·4·2 통합돌봄데이 운영

- 매월 2회 이상, 4명 이상 함께, 2세대 이상 통합방문
- 방문대상 : 노인, 장애인, 취약계층, 사례관리가구 등
- 동장의 통합방문으로 대상자의 복지욕구 파악 및 통합서비스 적극 지원
- 공무원, 민간인력, 방문형서비스기관, 명예사회복지공무원(협의체 위원, 복지동장 등) 합동 방문으로 원스톱 통합서비스 제공

### ○ 연계·협력 회의체 구성·운영

- 핵심연계 :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상담, 보건소 방문건강관리사업
- 중점연계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가시간병방문서비스
- 일반연계 :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산모신생아도우미서비스
- 방문형서비스 운영사업현황

사업 구분	주요 대상	사업 내용	제공기관
동 방문상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욕구조사, 서비스제공 모니터링	동 행정복지센터
통합사례관리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욕구조사, 서비스제공 모니터링	동 행정복지센터, 구청 희망복지지원단
방문건강 관리서비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건강검진 후 이상이 있으신 분	(노인, 만성질환자, 영유아 등) 질환별·생애주기별 건강관리	동 행정복지센터, 수영구보건소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65세 이상 독거·조손·고령부부 노인 등 돌봄이 필요한 노인 (기초 수급자, 기초연금, 차상위계층)	안전지원, 사회참여, 생활교육, 일상생활지원, 민간후원 연계, 특화서비스 제공	수영구노인복지관 수영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광안노인복지관
장애인활동 지원서비스	만 6세~65세 미만 등록장애인	활동지원사가 방문하여 신체, 가사, 이동보조 등의 서비스 제공 (등급에 따라 월 60~480시간 지원)	부산가톨릭 농아인복지회 (사)수영구장애인협회
가시간병 방문도우미	만 65세 미만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가사·간병 서비스 지원	수영지역자활센터
노인장기요양 서비스	장기요양등급 1~5등급 및 인지기원등급	신체활동, 가사활동 지원	남천재가노인지원센터 등
노인학대 예방사업	학대판정노인	상담 및 일시보호 등 서비스 제공	부산서부 노인보호전문기관

### ○ 지원대상

갑작스러운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휴·폐업, 실직 등으로 인한 소득상실, 중한 질병 등으로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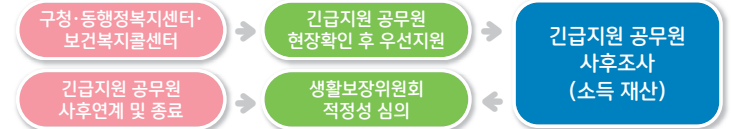
### ○ 지원종류 및 선정기준

- 소 득 : 기준 중위소득 75%  
(1인기준 1,370천원, 4인 기준 3,657천원) 이하
- 재산기준 : 대도시 18,800만원 이하, 중소도시 11,800만원 이하, 농어촌 10,100만원 이하
- 금융재산 : 500만원 이하(단, 주거지원은 700만원 이하)

종류	지원내용	지원금액	최대횟수 (연장심의포함)
생계지원	식료품비, 의복비, 냉방비 등 생계유지비	1,266천원 (4인기준)	6회
의료지원	각종 검사, 치료 등 의료서비스 지원 -300만원 이내(본인부담금 및 비급여항목)	300만원 이내	2회
주거지원	국가 지자체 소유 임시거소 제공 또는 타인 소유의 임시거소 제공 -원칙적으로 제공자에게 거소사용 비용 지원	643천원 이내 (대도시 3~4인 기준)	12회
복지시설 이용지원	사회복지시설 입소 또는 이용서비스 제공 -시설 운영자에게 입소 또는 이용비용 지원	1,450천원 이내 (4인기준)	6회
교육지원	초·중·고등학교 중 수업료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학생의 학비지원	초 : 221천원 중 : 352천원 고 : 432천원 및 수업료·입학금	2회 (주거지원 대상자:4회)
그밖의 지원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 중 다음의 경우에 지원 - 동절기(10~3월) 연료비 : 98천원 /월 - 해산비 : 70만원 - 전기요금 : 50만원 이내 - 장제비 : 80만원 ※ 전기요금은 단전된 때(소전류 제한기 부설 포함)		1회 (연료비 6회)

※ 국민기초수급자는 긴급복지지원 대상자가 될 수 없으나 수술 또는 중환자실 이용 등 긴급한 사유로 의료비를 감당하기 곤란한 경우의 의료지원 가능.  
※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 및 적정하지 않게 지원을 받은 경우 비용을 반환하여야 함.

### • 지원절차



• 문의처 : 복지정책과 (610-4347)



##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 지원사업

### ○ 사업목적

실제 생활이 어려우나 법적 구비 요건을 갖추기 어려워 공적 지원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저소득층의 생활안정 지원도모

### ○ 사업개요

- ▶ 지원근거 : 부산광역시 수영구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 지원조례
- ▶ 지원대상 :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 가정 중 위기사유로 생계가 곤란한 자
  - 주소득자의 사망, 행불, 수용, 가출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할 때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할 때, 단전 단가스, 건강보험료 체납가구
  - 최근 3개월 내 기초생활수급 중지 및 제외가구 등
  -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또는 통합사회회의에서 저장강박 의심가구로 인정 되는 가구
  - 무연고 사망자인 경우

### ▶ 지원단가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 이상 가구
생계지원	369,200	569,200	724,600	878,400	1,000,000
주거지원	387,200		643,200		848,600
의료지원	연 100만원 한도 내				

- ▶ 지원분야 : 생계, 의료, 주거, 교육, 주거환경 개선, 저장물품 처리(저장강박 의심 가구), 유품정리(무연고 사망자)
- ▶ 지원한도 : 생계, 의료, 교육(세대당 1백만원), 주거환경개선비(1회 3백만원), 교육비, 유품정리비(1회 50만원), 저장물품 처리비(세대당 50만원)
- ▶ 지원제외 : 타법을 지원 우선의 원칙, 동일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지원 제외(국민 기초생활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 의료급여법 등 우선 지원)

### ○ 접수처 :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 공공부문 사례관리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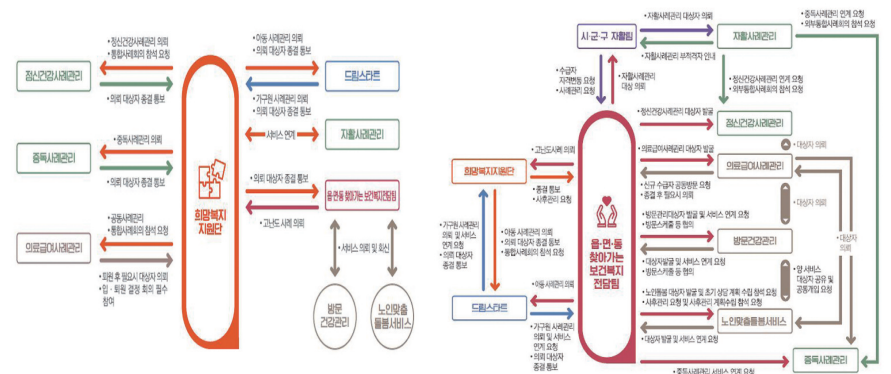
지역 내 공공부문 사례관리 사업의 연계·협력 체계 구축을 통해 사례관리 서비스 제공 및 이용의 효율성과 효과성 증진

### ○ 공공부문 사례관리 기관 간 연계·협력 네트워크망 구축

- 연계협력 기관 : 희망복지지원계, 드림스타트계, 노인복지계, 생활보장계, 자활지원계, 수영구보건소, 동행정부지센터
- 부서별 주요업무

부서	구분	주요업무
희망복지지원계	통합사례관리사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고난도 사례관리
드림스타트계	아동사례관리사	0~12세 아동의 사례관리 및 서비스연계
노인복지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65세 이상 취약노인 방문상담, 일상생활 지원
생활보장계	의료급여관리사	의료급여 대상자의 관리 및 입·퇴원 지원
자활지원계	부산수영지역자활센터	자활사업 참여 대상자 취·창업 지원 관리
수영구보건소	방문건강관리사업	사회복지 서비스 대상자 방문건강관리
	수영구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건강 상담, 예방, 모니터링 및 중독관리
동 행정복지센터	사례관리담당자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통합사례관리

### ○ 지속적 관리 또는 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자들에게 통합사례회의를 통한 적합한 공공부문 사례관리 연계·제공



(희망복지지원단) 코디네이터 기능

(동) 게이트웨이 기능





## 통합사례관리사업 개요

### ○ 통합사례관리

복합적이고 다양한 욕구를 가진 대상자에게 복지·보건·고용·주거·교육 등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제공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상담·모니터링 하면서 지역 주민의 삶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지지하는 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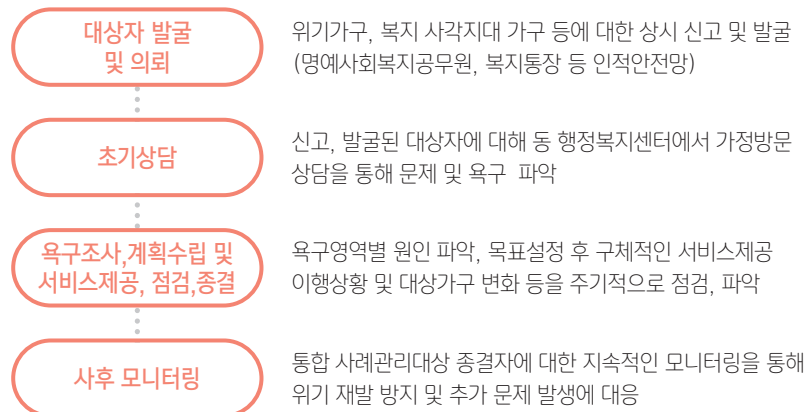
### ○ 중점 사업대상

- ▶ 통합사례관리를 통해 탈빈곤·자활 지원 가능 가구(기초생활수급자 중 특히 신규수급자, 기초수급 탈락자 등)
- ▶ 차상위 빈곤가구. 특히, 긴급지원 대상가구 및 국민기초생활수급자자격 탈락 가구 중 통합 사례관리를 통해 빈곤예방 지원 가능 가구

### ○ 사례관리 서비스 지원 내용

- 상담을 통한 대상자 생활실태 및 욕구파악, 정서적 지지
- ▶ 복지, 보건, 고용, 주거, 교육 등 통합적 서비스 연계
  - ▶ 자활 및 자립지원

### ○ 통합사례관리진행절차



## 통합사례관리대상자 지원을 위한 공공/민간서비스

### ○ 공공기관 서비스

- 공적부조**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법정 차상위제도, 기초연금, 장애인연금(수당), 긴급지원, 의료급여, 보육료지원 등
- 방문형 서비스** : 방문간호, 노인돌봄서비스, 가사간병서비스, 장애인활동 지원서비스, 노인장기요양보험(방문요양, 방문목욕 등)
- 자원개발 및 연계** (수영구 희망복지지원단+사회복지공동모금회) : 저소득 가정 자녀공부방 만들기, 이웃돕기(후원물품, 현금지급) 상시적 자원 개발 및 지원

### ○ 민간기관 서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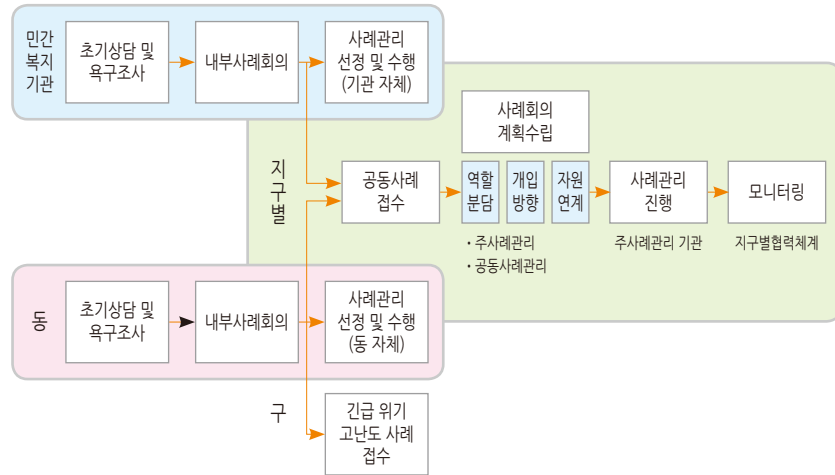
- 전문상담 및 치료 프로그램** : 개별상담, 집단상담, 심리검사, 아동·청소년 상담 등 다양한 상담 치료 프로그램 운영
- 후원 및 결연** : 후원자 개발 및 1:1 결연, 재가복지봉사센터 등을 통한 사례관리
- 자원개발 및 연계** : 바자회, 프로그램 공모, 후원처 개발 등을 통한 자원 발굴 관리 지원

### ○ 통합사례관리 민관협력체계 구축

▶ 지구별 사례관리 추진

구 분	광안지구		망미지구	
	추진기관	홀트수영종합사회복지관	추진기관	부산종합사회복지관
민 간	참여기관	부산수영지역자활센터 수영구청신건강복지센터 수영구청장애인복지관 광안노인복지관	참여기관	부산수영지역자활센터 수영구청신건강복지센터 수영구청장애인복지관 광안노인복지관
	공 공	남천1·2동, 광안1·2·4동(5개동)	수영동, 망미1·2동, 광안3동, 민락동(5개동)	
협업단체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 지구별 공동사례관리 흐름도



○ 솔루션위원회 및 슈퍼비전 회의 운영

▶ 추진내용

복합적이고 해결하기 어려운 고난도 사례의 개입방안 및 문제해결을 위한 자문역할

솔루션위원회	슈퍼비전
- 고난도 사례에 대해 여러 분야 전문가들의 다각적인 논의, 방향성 등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 솔루션위원회 개최 ※ 사회복지, 학계, 의료, 경찰, 임상심리, 가족치료 등	- 고난도 사례에 대해 한 분야의 전문가에게 자문이 필요한 경우 슈퍼비전 회의 개최 ※ 사례관리, 정신건강, 법률, 중독관리, 고용 등



# 기초생활보장

- 기초생활보장제도 안내 \_52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지원내용 \_53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감면혜택 \_56
- 저소득층 통신요금 감면제도 \_57
- 부산형 기초보장제도 안내 \_58





## 기초생활보장제도 안내

(2015년 7월 1일부터  
맞춤형급여 시행)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지원내용

### ○ 지원대상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최저보장수준 이하의 모든 가구

- ※ 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 기준, 부양의무자 기준 동시 충족
- ※ 주거급여,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판정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 ※ 수급(권)자 가구에 노인·한부모가구,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있는 경우,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제외
- ※ 주거급여 수급가구원 중 취학, 구직 등을 목적으로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만 19세~30세 미만 미혼 청년에게 별도 청년주거급여 지급

### ○ 보장절차

#### 급여신청

신청자 :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로 본인 또는 친족·기타 관계인 신청  
구비서류 : 신청서, 임대차계약서, 금융거래정보 등 제공동의서 기타 조사에 필요한 서류

#### 조사

부양의무자 유·무, 부양능력 및 부양여부  
수급권자와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및 생활실태조사  
수급권자의 근로능력·취업상태·자활육구·주택조사(나시행) 등

#### 급여결정

급여실시 여부 및 급여내용 결정  
급여신청결과 통지서 서면통지

#### 급여실시

가구 또는 개인에 대하여 결정된 급여제공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 확인조사

수급자 또는 부양의무자 가구의 변동사항 조사  
결과에 따라 급여변경, 급여중지 등 결정

#### 보장중지

소득, 재산 등의 변동으로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보장중지  
일부 부정수급자 등에 대하여는 보장비용 징수

### ○ 2021년 기준 중위소득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1,827,831	3,088,079	3,983,950	4,876,290	5,757,373	6,628,603

###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 기본재산액(6,900만원) - 부채] × 재산의 소득환산율(월 1.04%~100%)

### ○ 부양의무자

: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 ○ 급여내용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가구규모별·급여종류별 선정기준” 과 비교하여 급여종류별로 수급자 선정 및 생계·주거급여액 결정

〈 2021년 가구규모별·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

가구규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30%이하)	548,349	926,424	1,195,185	1,462,887	1,727,212	1,988,581
의료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40%이하)	731,132	1,235,232	1,593,580	1,950,516	2,302,949	2,651,441
주거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45%이하)	822,524	1,389,636	1,792,778	2,194,331	2,590,818	2,982,871
교육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50%이하)	913,916	1,544,040	1,991,975	2,438,145	2,878,687	3,314,302

\* 생계급여수급자 선정기준 중위소득 30%는 동시에 생계급여 지급기준에 해당

### ○ 교육급여

급여종류	부교재비	학용품비	교과서	입학금/수업료
초등학생	134,000	72,000	-	-
중학생	212,000	83,000	-	-
고등학생	212,000	83,000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 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액
지급방법	연1회	연2회 (1/4,3/4분기)	연1회	입학금은 입학 시 1회 수업료는 분기별지급

- 해산급여 : 출산여성 1인당 70만원(쌍둥이 출산시 140만원)
- 장제급여 : 근로능력 유무와 관계없이 1구당 80만원
- 정부양곡 할인 지원
  - 신청대상 : 수급자 및 차상위 복지수급권자 중 정부양곡 구입을 희망하는 자
  - 공급방법 : 공급희망자(거주지) 가구로 택배회사에서 직접배달
  - 신청방법 : 매월 10일까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전화신청
  - 공급가격

구분	본인부담금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주거·교육급여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10kg	2,800원	11,900원



### ○ 의료급여 지원

구분	수급권자	본인부담의료비	
		외래	입원
1종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근로무능력자) ·행려환자 ·국가유공자, 국내입양아동 ·북한이탈주민(새터민), 무형문화재보유자 ·5·18민주화운동관련자 ·이재민, 의사상자	·의원 : 1,000원 ·병원·종합병원 : 1,500원 ·대학병원 : 2,000원 ·약국 : 500원 ·CT, MRI, PET : 5% 본인부담	·급여비용 무료 ·비급여 본인부담
2종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근로능력자)	·의원 : 1,000원 ·병원·종합병원·대학병원 : 총 진료비 의 15% 본인부담 ·약국 : 500원 ·CT, MRI, PET : 15% 본인부담	·급여비용 10% 자부담 ·비급여 본인부담

### ○ 건강생활유지비

- 지원대상 : 의료급여 1종 수급자 (외래진료시 본인부담금 도입에 따라 매월 6천원씩 가상계좌로 본인부담금 지원)
- 지원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사용 잔액내역 발취하여 익년도에 수급권자 별로 보장기관에서 계좌 입금

### ○ 본인부담보상금

- 지원대상 : 1종 수급자가 입원(외래)진료로 매 30일간 2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종 수급자가 입원(외래)진료로 매 30일간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지원금액 : 초과하는 금액의 50% 지원
- 비급여 본인부담

### ○ 본인부담상한제

- 지원대상 : 1종 수급자가 입원(외래)진료로 매 30일간 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종 수급자가 입원(외래)진료로 연간 8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지원금액 : 본인부담금보상제 선 적용 후 일정 수준 초과한 경우, 초과하는 금액의 100% 지원
- 비급여 본인부담

### ○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 지원대상 :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임신 중이거나 출산(유산 및 사산포함)한 수급권자
- 지원금액 : 1인 60만원(다태아인 경우에는 100만원)
- 신청접수 : 동 행정복지센터 및 구청 기초생활보장과
- 지원범위 : 산부인과 진료과목으로 진료 받은 산모에 대한 본인부담금(약제·치료재료 포함) 및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의 영아에 대한 진료비(약제·치료재료 포함)
- 신청서류 : 임신출산지원(등록)신청서 및 예정일이 기재된 임신확인서

### ○ 의료급여 상한일수 및 연장승인

- 등록 중증질환, 등록 희귀·중증난치질환(결핵 포함) 각 질환별 연간 365일
- 만성고시질환 각 질환별 연간 380일
- 그 외 기타질환 모두 합산하여 연간 400일
- 연간 질환군별 상한일수를 초과하여 의료급여를 받아야 할 경우 "연장승인신청서"를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

### ○ 의료급여일수 산정방법

: 의료급여일수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입원일수, 투약일수, 투약 없이 외래로 의료급여를 받는 경우의 급여일수를 합하여 산정

### ○ 연장신청 일수

- 등록 중증질환, 등록 희귀·중증난치질환(결핵 포함) 90일(보장기관 직권 연장승인)
- 만성고시질환 75일
- 기타질환 1회 90일, 2회 55일  
※ 연장승인 미신청자는 신청서 제출 시까지 건강보험 수준의 본인부담을 적용(입원 20%, 외래·약국 30%)

### ○ 노인완전틀니

- 지원대상 :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 지원절차 : 의료급여기관에서 등록신청서를 발급받은 후 보장기관에 사전 신청·등록 후 시술
- 지원내용 : 레진상 완전틀니, 금속상 완전틀니, 클라스프 부분틀니, 사전 임시틀니, 사후유지 관리(1종 수급권자 5%, 2종 수급권자 15% 본인부담)
- 본인부담금 보상제 및 상한제 미적용, 2종 장애인 의료비 지원대상 아님
- 구비서류 : 신청서(동행정복지센터나 구청 기초생활보장과 방문제출)

### ○ 의료급여 치과임플란트

- 지원대상 :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 지원절차 : 의료급여기관에서 등록신청서를 발급받은 후 보장기관에 사전신청·등록 후 시술
- 지원내용 : 1인당 평생2개 급여적용(1종 수급권자 10%, 2종 수급권자 20% 본인부담)
- 본인부담금 보상제 및 상한제 미적용, 2종 장애인 의료비 지원대상 아님
- 구비서류 : 신청서(동행정복지센터나 구청 기초생활보장과 방문제출)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감면혜택

## 저소득층 통신요금 감면제도

구분	감면대상	감면내용	구비서류	신청기관	비고
주민세비과세	수급자	·매년 8월에 전 구민에게 부과 되는 개인공통할 주민세감면	없음	구청에서 일괄 비과세처리	
TV 수신료면제	기초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월 수신료 면제	전기요금 고지서	KBS방송국 및 관할 한전	한국전력공사 (국번없이123) KBS수신료 콜센터 (1588-1801)
주민등록증 재발급, 주민 등록 등·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	수급자	·주민등록증 재발급,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	없음	동 행정 복지센터	
쓰레기 규격 봉투 및 음식물 스티커 무료제공	수급자	·규격봉투 : 1인당 10리터 3매 ·음식물스티커 : 3리터 6매 / 5리터 4매 ▶단, 장기입원자 등은 미지급	없음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전기요금 감면	수급자	·생계·의료급여수급자 : 월 16,000원 한도 (해당월 전기요금, 6~8월 하절기 2만원) ·주거·교육급여수급자 : 월 10,000원 한도 (해당월 전기요금, 6~8월 하절기 12천원)	주민등록 등본, 수급자 증명서	관할 한전	직접방문신청 및 대행신청가능 한국전력공사 (국번없이123)
문화누리카드 이용료 지원	수급자 차상위	개인당 연간 9만원 (차년도 이월사용 불가)	없음	동 행정복지센터	문화누리카드 고객 지원센터 (1544-3412)
교통안전공단 자동차 검사소 정기 및 종합검사 수수료 면제	기초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교통안전공단 자동차 검사소 (출장검사장 포함) 자동차 정기 및 종합검사 수수료 면제 * 보장시설수급자, 주거·교육 급여 수급자는 제외	교통안전공단 문의	교통안전공단	1577-0990

구분	장애인·국가유공자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주거·교육급여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기초연금
시내전화	·월 통화료 50% 감면			
시외전화	·월통화료50% 감면 (월33,000원 사용액까지만 감면을 적용)	·시내외통화료 중 월 450분 공제		
이동전화	· 기본료 : 35%할인 · 데이터 : 35%할인 · 국내음성 : 35% 할인	· 기본료 : 전액감면 (월 최대 28,600원) · 데이터 및 국내음성 50%할인 (최대 감면액 36,850원)	· 기본료:전액감면 (월 최대 12,100원) · 데이터 및 국내음성 35%할인(최대 감면액 23,650원)	· 기본료, 데이터, 국내음성:50% 감면 (최대 감면액 12,100원)
114 안내료	· 전액감면(직접연결서비스 요금 제외)			
신청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선전화 : 관할 전화국에 신청</li> <li>· 이동전화, 인터넷 : (개인)신분증 및 수급자증명서 지참하여 통신업체에 신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저소득층 및 장애인의 경우는 인터넷으로 신청 가능</li> <li>※ 민원24(www.gov.kr) : 공인인증서 로그인 → 민원검색 → “이동통신 요금할인” 검색 → 이동통신 요금 할인 정보 입력 → 민원 신청하기</li> <li>복지로(www.bokjiro.kr) : 온라인신청(신청하기) → 공인인증서 로그인 → 요금감면서비스 → 요금 할인 정보 입력 → 신청하기</li> </ul> </li> </ul>			





## 부산형 기초보장제도 안내

(2016년 10월부터 시행)

### ○ 지원대상

- ▶ 대상자 선정기준(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신청 불가)
  - 부산시 거주기간 : 신청일 현재 세대주 주민등록 기간이 1개월 이상인 가구
  - 소득 및 재산기준 동시충족
  - 소득기준 : 가구 소득평가액이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 재산기준 : 가구당 1억3천5백만원 이하, 금융재산 2천5백만원 이하

< 2021년도 부산형 기초보장제도 대상자 가구규모별소득기준 >

가구규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중위소득 40%	731,132	1,235,232	1,593,580	1,950,516	2,302,949	2,651,441

- ▶ 부양의무자 기준
  - 부양의무자 : 1촌의 직계혈족(부모, 아들, 딸) 및 그 배우자(며느리, 사위)
  - 소득 및 재산기준 동시충족
  - 소득기준 : 1인 대상가구 부양능력판정 소득기준 140~170%
  - 재산기준 : 가구당 4억 5천만원 이하

< 2021년도 부산형 기초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가구규모별소득기준 >

가구규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소득기준	4,598,821	6,492,658	6,601,114	7,850,390	9,083,907	10,303,629

### ○ 급여내용

- ▶ 최저생계유지비(생계급여)
  - 지원금액 - 1인 가구 기준 최저 82,000원, 최고 219,000원  
- 4인 가구 기준 최저 219,000원, 최고 585,000원
  - 지급일시 : 매월 25일 (토·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
- ▶ 부가급여
  - 지원대상 : 부산형 기초보장수급자 중 노인, 장애인 한부모 구성가구
  - 지원금액 - 1인 가구 기준 최저 27,000원, 최고 54,000원  
- 4인 가구 기준 최저 73,000원, 최고 146,000원
  - 지급일시 : 매월 25일 (토·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

○ 신청 :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 저소득 주민복지

- 주거안정지원사업 \_60
-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_63
- 가사간병방문도우미사업 \_71
- 법률상담터 \_73





## 주거안정지원사업

### ○ 영구임대주택(아파트)

- ▶ 영구임대를 목적으로 하여 기초생활수급자와 같은 특정대상이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도록 건설한 주택(아파트)
- ▶ 입주대상 : 다음의 입주자격을 갖춘 무주택세대구성원
  - 1순위 ▶ 생계·의료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 가정, 저소득 고령자, 장애인,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인 국가유공자
  - 2순위 ▶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의 100%이하인 장애인 가구,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의 50%이하인 가구
- ▶ 주택규모 : 12~13평 (전용면적 8~9평)
- ▶ 신청순위 : 소득수준, 가족상황, 거주기간 등을 감안 종합점수에 의거 고득점자 순
- ▶ 추진절차 :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부산도시공사 임대주택 모집 공고 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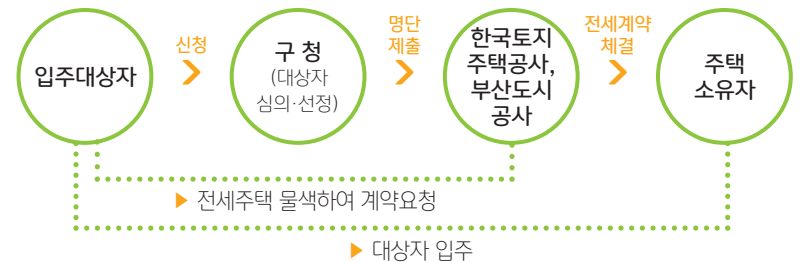
### ○ 매입임대주택

- ▶ 사업주체 기관(한국토지주택공사·도시공사)에서 주택을 매입하여 저소득층이 현생활권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시중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하는 제도
- ▶ 입주대상 : 무주택 세대주로 현 사업대상지역에 주민등록 등재되어 있는 자 중
  - 1순위 ▶ 생계·의료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 가정, 저소득 고령자, 주거지원 시급가구,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의 710%이하인 국가유공자, 장애인,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 2순위 ▶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의 100%이하인 장애인 가구,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의 50%이하인 가구
- ▶ 임대조건 : 시중임대료의 30% 수준, 전세로 전환가능
- ▶ 임대기간 : 최초 임대기간 2년, 2년 단위 재계약 5회까지 가능 (최장 10년)
- ▶ 추진절차 :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부산도시공사 임대주택 모집 공고 확인



### ○ 기존주택 전세임대 / 신혼부부 전세임대

- ▶ 사업내용 : 임차인이 선정한 주택에 사업주체가 임차인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임차인에게 재임대하는 제도
- ▶ 입주대상 :
  - 기존주택 전세임대 : 무주택 구성원으로 현 사업대상지역에 주민등록 등재되어 있는 자 중
    - 1순위 ▶ 생계·의료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 가정, 저소득 고령자, 주거지원 시급가구,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인 국가유공자, 장애인
    - 2순위 ▶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의 100%이하인 장애인 가구,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의 50%이하인 가구
  - 신혼부부 전세임대 : 무주택 구성원으로 현 사업대상지역에 주민등록 등재되어 있는 신혼부부 중
    - 1순위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임신중이거나 출산하여 자녀가 있는 경우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이하인 자
    - 2순위 ▶ 그밖에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이하인 자
- ▶ 임대조건
  - 임대보증금 : 지원한도액 범위내 전세지원금의 5%(입주자부담)
  - 월 임대료 : 전세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한 연 1~2%이자
- ▶ 임대기간 : 최초 임대기간 2년, 2년 단위 재계약 9회까지 가능 (최장 20년)
- ▶ 추진절차 :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부산도시공사 임대주택 모집 공고 확인
  - ※ 기존주택 전세임대 1순위 대상자의 경우 수시지원 가능





### ○ 버팀목 전세대출

- ▶ 용자대상
  - 대출 신청일 현재 만19세 이상인 세대주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중, 부부 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의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로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경우
- ▶ 대상주택 : 임차전용면적 85㎡이하
- ▶ 대출한도 : 전(월)세 계약상 임차보증금의 70%이내 / 최대 호당 8천만원 (다자녀가구 1억원)
- ▶ 상환기간 : 2년 만기 일시상환방식(2년 단위 총4회 연장 가능 / 최장 10년)
- ▶ 금 리 : 연2.3%~2.9%(보증금 및 소득에 따라 상이)
  - ※ 우대금리
    -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원 이하로서, 기초생활수급권자 / 차상위계층 / 한부모 가족 확인서를 발급받은 가구 연 1%, 다자녀 연 0.5%, 고령자 / 노인부양 / 장애인가구 / 신혼부부 연 0.7% 금리 인하(중복적용 불가)
- ▶ 신청시기 : 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
- ▶ 대출상당 및 신청 : 수탁은행(우리, 국민, 신한, 기업, 농협) 임차주택 소재지 취급 은행 지점에 상담 후 대출 신청

### ○ 주거안정 월세 대출

- ▶ 용자대상
  - 무주택자 세대주로서 다음중 하나에 해당
    - 우대형 : 취업준비생, 희망키움통장가입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사회초년생, 자녀장려금 수급자, 주거급여 수급자
    - 일반형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자 중 우대형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 ▶ 대상주택 : 임차전용면적 85㎡이하,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 ▶ 대출한도 : 매월 최대 40만원씩 2년간 총 960만원 한도로 대출
- ▶ 상환기간 : 2년 만기 일시상환(2년 단위 총4회 연장 가능/ 최장 10년)
- ▶ 금리
  - 우대형 : 연1.5%(변동금리)
  - 일반형 : 연2.5%(변동금리)
- ▶ 신청시기 : 월세임대계약 사실이 증빙될 경우
- ▶ 대출상당 및 신청 : 수탁은행(우리, 국민, 신한, 기업, 농협) 임차주택 소재지 취급 은행 지점에 상담 후 대출 신청

###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 ○ 동화야 놀자 (스토리텔링)

서비스 가격 (천원)	서비스 가격	74	정부 지원금	단독, 패키지 동일 ①64②54③44	본인부담금	①10②20③30
바우처 생성정보	지원기간	12개월		생성주기	1개월마다	
대상자 선정기준	소득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출생연도	2014~2018	
	가구특성 및 우선순위	1. 가구특성 : 해당없음 2. 우선순위 : ① 한부모 ② 다문화 ③ 맞벌이 ④ 연령(고연령 순) 3. 중복이용 불가사업 : 시청각장애인부모 자녀의 언어발달지원사업				
서비스 내용	1. 유아단독형&패키지형 통합운영 2. 동화구연&연극 ① 연령에 맞는 동화를 선택하여 구연, 행연(신체표현을 겸한 구연), 악연(음악 및 음률을 가미한 구연) 서비스 제공 ② 인형, 그림, 막대, 완구, 손유희, 그림자 동화 등 연극 관련 및 참여, 역할극, 발표회					
	제공 장소	기관방문형 (1~8인)	제공 주기	월4회(주1회)	제공 시간	50분

#### ○ 해양역사·문화체험 아카데미

서비스 가격 (천원)	서비스 가격	150	정부 지원금	①135 ②120 ③110	본인 부담금	①15 ②30 ③40
바우처 생성정보	지원기간	12개월		생성 주기	1개월마다	
대상자 선정기준	소득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출생 연도	2006~2014 또는 초등 재~중학 재	
	가구특성 및 우선순위	1. 가구특성 : 해당없음 2. 우선순위 : ① 한부모 ② 조손세대 ③ 다문화 ④ 다자녀(3인이상) ⑤ 맞벌이 ⑥ 연령(고연령 순)				
서비스 내용	1. 지역의 역사, 문화, 해양관련 기본과정 - 지역의 역사, 문화, 해양을 주제로 사회성, 창의력, 리더십 증진 2. 지역의 역사, 문화, 해양 체험 - 지역의 역사, 문화, 해양 관련 유적지, 박물관, 기념관 체험 및 부산의 인물, 스포츠, 문화 체험, 안전교육					
	제공장소	기관방문형 (1~12인)	제공주기	1. 월3회(주1회) 2. 월1회	제공시간	1. 90분 2. 450분





○ 아동건강관리서비스

서비스 가격(천원)	서비스 가격	85	정부 지원금	①75 ②65 ③57	본인 부담금	①10 ②20 ③28
바우처 생성정보	지원기간	12개월	생성 주기	1개월마다		
대상자 선정기준	소득	제한없음	출생 연도	2009~2016		
	가구특성 및 우선순위	1. 가구특성 - 과체중아동(비만도 120% 이상) 또는 저체중아동(비만도 85% 이하) 연령대비 표준 몸무게 및 표준 키 미달자로 발달 지연에 대한 의사소견이 있는 자 2. 우선순위 ① 의사소견서(발달지연) ② 비만을 높은 손 ③ 저체중 심각수준 손 ④ 체성분 분석결과 표준범위 외의 자 3. 중복이용 불가사업 :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바우처				
서비스 내용	1. 맞춤형 운동처방, 지도 : 구기종목 등 유산소운동, 안전교육 2. 식생활 습관 교정지도 - 영양 및 식생활 습관 개선교육 - 월별 변화정도, 권장식단, 부모협조 등의 자료(문서, 가정통신문 등)제공					
	제공장소	기관방문형 (15인 이하)	제공주기	1. 월7회(주2회) 2. 월1회	제공 시간	90분



○ 아동·청소년 심리치유서비스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서비스 가격(천원)	서비스 가격	180~270	정부 지원금	①162②144 ③126 ④108	본인 부담금	①18~54②36~96 ③54~126④72~162
바우처 생성정보	지원기간	12개월	생성 주기	1개월마다		
대상자 선정기준	소득	제한없음	출생 연도	2003년(포함)이후		
	가구특성 및 우선순위	1. 가구특성 : 발달지연 및 문제행동 ①-1 발달 지연 관련 의사 소견서 또는 관련 의료기록 ①-2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 10백분위(%) 이내인 자 ②-1 문제행동(ADHD) 관련 의사 소견서+검사결과지 ②-2 문제행동 관련 의료기록+검사결과지 ③-1 드림스타트센터·정신건강복지센터, 아동보호종합센터·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추천하는 아동 ③-2 학교담당교사, 학교복지사, 학교상담교사(특수교사, 특수반교사 포함), Wee클래스·센터·스쿨에서 추천하는 아동 ④ 공공기관·병원·일반기관에서 근무하는 임상심리사·청소년상담사·언어재활사 소견서 +검사결과지 2. 우선순위 ① 공공전달체계(드림스타트센터·정신건강복지센터) 연계자 ② 학교담당교사, 학교복지사, 학교상담교사(특수교사, 특수반교사 포함) ③ Wee클래스·센터·스쿨 추천자 ④ 아동보호종합센터·아동보호전문기관 추천자 ⑤ 한부모, 아동시설 입소자, 대안학교 재학생 ⑥ 의사소견서, 의료기록(영유아 건강검진 결과 등), 임상심리사 소견서 ⑦ 청소년상담사·언어재활사 소견서 3. 중복이용 불가사업 ① 발달재활서비스 ②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자녀언어 발달사업 ③ (290503)아동정서발달지원서비스				
서비스 내용	1. 발달지원 ① 발달기초 : 기본적 대근육, 소근육 운동기술 촉진 ② 언어발달 : 의사소통 기능, 기술 및 어휘발달 촉진 ③ 초기인지 : 감각운동에 기초한 인지발달 촉진 ④ 정서·사회성 : 기본적인 정서표현, 가족 및 타인과의 사회성 활동 촉진 2. 문제행동 ① 심리상담 : 문제행동 아동 및 부모를 위한 심리상담(회당 10분 내외) ② 개인맞춤형 - 놀이프로그램 : 놀이를 통하여 아동의 심리적 안정감, 사회적 정서발달 등 지원 - 언어프로그램 : 언어장애에 대한 개인의 내적, 환경적 원인을 분석, 증상별 치료계획을 수립, 적절한 치료로 잠재된 언어능력을 극대화시켜 의사소통능력 향상 - 인지프로그램 : 아동의 발달수준과 개별적 특성에 적합한 목표를 설정하여 표현과 더불어 자존감 향상 및 감각발달 향상 - 미술프로그램 : 다양한 미술매체를 이용, 자유로운 창의적 표현, 자존감 향상 - 음악프로그램 : 다양한 악기 또는 음악을 통한 표현력 향상, 정서발달 향상					
	제공장소	기관방문형 -1인 원칙	제공주기	월4회 (주1회)	제공시간	50분



○ 아동정서발달지원서비스

서비스 가격(천원)	서비스 가격	180~210	정부 지원금	①160 ②140 ③120	본인 부담금	①20~50 ②40~70 ③60~90
바우처 생성정보	지원기간	12개월	생성 주기	1개월마다		
대상자 선정기준	소득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출생연도	2008~2017		
	가구특성 및 우선순위	1. 가구특성 ① 해당 기관에 근무하는 임상심리사, 청소년상담사 소견서 ② 학교담임교사, 학교복지사, 학교상담교사(특수교사, 특수반교사 포함), Wee클래스·센터·스쿨에서 추천하는 아동 ③ 유아교육기관장·어린이집원장이 추천하는 아동 ④ 효과성 검사 결과 점진적 이상인 아동 2. 우선순위 ① 학교 담임교사, 학교복지사, 학교상담교사 ② Wee클래스·센터·스쿨 추천자 ③ 한부모 ④ 아동시설 입소자, 대안학교 재학생 ⑤ 임상심리사 소견서 ⑥ 청소년상담사 소견서 ⑦ 유아교육기관장·어린이집원장 추천자 ⑧ 고연령 순(만 13세 ~ 만 4세) 3. 중복이용 불가사업 ① 발달재활서비스 ②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자녀언어 발달사업 ③ (011003)아동청소년심리치유서비스				
서비스 내용	학교부적응 등 정서행동적 문제로 어려움이 예상되는 아동대상 클래식 악기 및 미술교육 등을 매개로 한 예술심리치료 서비스 제공 1. 음악 및 미술 실기 ① 악기이론 및 실기(바이올린, 플룻, 클라리넷, 비올라, 첼로 등 선택), 악기대여 ② 미술지도 : 기본 스케치 기술, 크레파스, 물감 등 채색화 그리기, 조각 및 만들기 2. 정서순화프로그램 : 미술치료, 음악놀이 치유, 통합예술치료 프로그램					
	제공장소	기관방문 (4인이하 소그룹)	제공주기	주8회(주2회, 1+2) 1. 월4회(주1회) 2. 월4회(주1회)	제공시간	60분

○ 뇌에 기가 팍팍

서비스 가격(천원)	서비스 가격	160	정부 지원금	①152 ②140 ③132	본인 부담금	①8(수급자:4) ②20 ③28
바우처 생성정보	지원기간	12개월	생성 주기	1개월마다		
대상자 선정기준	소득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또는 기초연금 수급자	출생 연도	1956(포함)이전 출생자		
	가구특성 및 우선순위	1. 가구특성 : 해당없음 2. 우선순위 : ① 1인가구 ② 의료기관 추천, 정신건강복지센터, 광역치매센터, 치매안심 센터 추천 등 공공전달체계 추천 ③ 노부부(부부 중 1인 80세 이상) ④ 임상심리사 추천 ⑤ 장애등록자 ⑥ 고연령순 3. 중복이용 불가사업 :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서비스 내용	1. Alz 학습요법 : 치매예방 및 중증악화 예방을 위해 과학적으로 검증된 두뇌 활성화 인지건강 프로그램 으로 학습요법 교재에 의한 1:1 맞춤형 읽기, 쓰기, 숫자계산으로 두뇌활성화 교육 2. 차문화 치료 : 차를 통한 정서가능 안정 및 상담 3. 탁발케어, 색종이접기, 회상요법, 치매예방체조, 레크레이션 중 택2 ※ 이용자 특성에 따라 프로그램 시간 계획 수립 가능					
	제공장소	재가방문형 (원칙) + 기관 방문형(허용) - 1인 원칙 - 3인 이하 (이용자 요청시)	제공 주기	월8회(주2회)	제공시간	60분 (3인 이하 90분)

○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서비스 가격(천원)	서비스 가격	160	정부 지원금	144	본인 부담금	16(수급자 : 8)
바우처 생성정보	지원기간	12개월	생성 주기	1개월마다		
대상자 선정기준	소득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또는 기초연금 수급자	출생연도	1961(포함)이전 출생자 (장애인 연령무관, 의료급여 연계자 1966(포함) 이전 출생자)		
	가구특성 및 우선순위	1. 가구특성 ①-1 만 60세 이상인 자로서 근골격계·신경계·순환계 질환이 있음을 입증하는 의사진단서, 소견서, 처방전 또는 진료확인서 등(질병분류코드 G, M, I 및 R81, E10~15) 제출자 ①-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연령무관) 근골격계·신경계·순환계 질환이 있음을 입증하는 의사진단서, 소견서, 처방전, 진료 확인서 등(질병분류코드 G, M, I 및 R81, E10~15) 제출자 ② 지체 및 뇌병변 등록장애인 ③ 구·군 통합사례관리사 추천자, 읍·면·동 케어인내장구 추천자, 의료급여사례관리사 추천자 2. 우선순위 ① 구·군 통합사례관리사 추천, 읍면동 케어인내장구 추천 ② 의료급여사례관리사 추천자 ③ 국가유공자 ④ M코드 ⑤ G, I코드 ⑥ R81, E10~15코드 ⑦ 장애인				
서비스 내용	근골격계, 신경계, 순환계 질환의 증상개선을 위한 안마, 마사지, 지압 등 수기요법 및 기타 자극요법에 의한 안마서비스 제공 - 전신안마, 마사지, 지압, 발마사지, 운동요법, 자극요법, 체형교정 등 개인맞춤형 안마서비스 ※수기 안마 외 기타 기구 사용할 경우 시간은 회당 15분 내로 제한 ※안마원, 안마시술소 내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만 해당					
	제공장소	기관방문형(1인)	제공주기	월4회(주1회)	제공시간	60분



○ 노인건강관리서비스

서비스 가격 (천원)	서비스 가격	①74(마루) ②120(수중)	정부 지원금	①64 ②108	본인 부담금	①10(수급자 5) ②12(수급자 6)
바우처 생성정보	지원기간	12개월		생성 주기	1개월마다	
대상자 선정기준	소득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또는 기초연금 수급자		출생 연도	1956(포함) 이전 출생자(의료급여 연계자 1966(포함) 이전 출생자)	
	가구특성 및 우선순위	1. 가구특성 ① 보건소 노인체력측정 3개부문(근지구력, 유연성, 평형성) 검사결과 평균 4등급 이상인 자 또는 표준범위 외의 자 ② 신체건강 등에 의학적 이상소견이 있는 자(의사진단서, 소견서, 진료확인서 제출자) ③ 체성분검사(보건소, 건강보험공단, 마을건강센터, 일반기관 모두 포함) 또는 기초체력검사 결과 표준범위 외의 자 ④ 의료급여 사례관리사 추천자(구·군 담당자) 2. 우선순위 ① 1인가구 ② 의료급여 사례관리사 연계자 ③ 신체질환자(의사 및 병원 진단·소견·진료확인) ④ 노인체력 측정 검사 결과 이상자 ⑤ 체성분 측정 검사결과 이상자 ※ ③순위 : 관절, 비만, 고혈압, 동맥경화, 당뇨 우선 적용				
서비스 내용	1. 마루운동서비스 ① 맞춤형 운동프로그램 - 기본 : 유연성 및 근력운동, 협동형 운동, 평형성 향상 운동 - 안전교육 ② 건강상태 상담 및 건강교육 - 체성분 검사와 기초체력 측정결과 토대로 생활패턴과 건강상태에 대한 상담 -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한 건강 관련 교육 ③ 발표회 또는 공연 : 실버로빅 등 제공 서비스에 대한 발표회 또는 강연 실시 2. 수중운동서비스 ① 수중운동 및 건강지원 프로그램 - 기본 : 수중걷기, 아쿠아로빅 등 수중운동을 통해 근력강화, 관절가동성 및 심폐기능 향상 지원 - 안전교육 ② 건강 및 영양교육 : 체성분 검사와 기초체력 측정결과를 토대로 개인별 건강상담(실문활용)을 실시하고 개인별 특성에 맞는 식생활 및 생활 패턴 개선 지도					
	제공장소	기관방문형 (1~25인)	제공주기	월8회 (주2회)	제공시간	90분



○ 장애인보조기기렌탈서비스

서비스 가격 (천원)	서비스 가격	월 120 (반기별 720)	정부 지원금	①108(648) ②96(576) ③84(504)	본인 부담금	①12(72) ②24(144) ③36(216)
바우처생성정보	지원기간	12개월		생성주기	6개월마다	
대상자 선정기준	소득	제한없음		출생연도	1997(포함)이후 출생자	
	가구특성 및 우선순위	1. 가구특성 ① 장애판정을 받은 지체 및 뇌병변 장애 아동·청소년, 척수장애 또는 근위축증으로 의사 진단서 발급이 가능한 아동·청소년(단, 6세 미만의 지체 및 뇌병변 장애가 예견되어 등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의사진단서가 있는 경우 인정) ※ 「장애인복지법」상 정신적 장애(지적·자폐성·정신 장애인)로 장애등급 판정을 받았 더라도 지체 및 장애등급 판정을 수반하는 중복장애인의 경우 시·군·구에서 발행하는 「장애인등록증」(부장애: 지체 및 뇌병변장애)을 제출할 경우 서비스 대상으로 인정 2. 우선순위 ① 장애정도 순 ② 저소득 순				
서비스 내용	1. 보조기기 대여 및 성장단계별 맞춤 지원 대상 장애 아동의 성장단계에 적합한 맞춤형 보조기기 대여 및 성장 단계에 따른 맞춤 지원 서비스(단, 건강보험공단 지원대상 품목 제외) 2. 점검 및 유지보수 : 정기점검(반기별 최소 1회) 및 수시점검 3. 상담 및 정보제공					
	제공 장소	재가방문형(1인)	제공 주기	연중렌탈 및 점검 (정기점검 연2회)	제공 시간	제한 없음

○ 자녀의 성공을 돕는 학부모 코칭-키울 Mom 난다

서비스 가격 (천원)	서비스 가격	1.집단140~220 2.개인140~300	정부 지원금	집단/개인 ①126 ②120 ③100	본인 부담금	1.집단 ①14~40 ②20~80 ③40~120 2.개인 ①14~120 ②20~160 ③40~200
바우처 생성정보	지원기간	12개월		생성주기	1개월마다	
대상자 선정기준	소득	제한없음		출생연도	제한없음	
	가구특성 및 우선순위	1. 가구특성 ① 미취학 및 초·중·고 자녀를 둔 부모 ② 예비부모(주민등록상 가족관계 확인가능자, 혼인신고자) ③ 조부모(조손세대) : 주민등록상 가족관계 확인가능자로 법적 조손가정과 주민등록상 조부모와 손자녀만이 거주하고 있는 가정 (주민등록상 손자녀의 부모가 함께 거주하지 않으면 이용가능) 2. 우선순위 ① 한부모 ② 조손세대(가정위탁부모 포함) ③ 예비부모 ④ 미취학 고연령 순 ⑤ 취학자녀 저연령 순				
서비스 내용	1. 발달단계에 따른 자녀 이해하기 ① 자녀행동 이해하기 ② 자아존중감, 나와 타인 이해하기 등 배려와 존중이 있는 아이로 키우기 2. 양육스트레스 이해 및 지원 ① 효율적 감정처리 방법 ② 긍정적 부모역할 교육 3. 화목한 가족관계 리더 되기					
	제공장소	기관방문형 -집단상담 (2~15) -개인상담	제공 주기	월4회 (주1회)	제공 시간	집단 120분 개인 50분



○ 부모자녀상호작용증진서비스

서비스 가격 (천원)	서비스 가격	①~③180 ④200	정부 지원금	①160 ②150 ③140 ④170	본인 부담금	①20 ②30 ③40 ④30
바우처 생성정보	지원기간	12개월		생성주기	1개월마다	
대상자 선정기준	소득	중위소득 150%이하		출생연도	2014~2018 출생자 13~24개월 영아의 보호자	
	가구특성 및 우선순위	1. 가구특성 : 해당없음 2. 우선순위 : ① 한부모 ② 조손세대 ③ 13개월~24개월 영아보호자 ④ 자연령 순(만3세~만7세) 3. 중복이용 불가사업 ① 발달재활서비스 ②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자녀언어발달사업 ③ (011003)아동청소년 심리치유서비스				
서비스 내용	1. 아동발달 및 상호작용증진 프로그램 및 RT중재서비스 - (조)부모 + (손)자녀 상호작용증진 위한 놀이활동 (미술, 음악, 요리, 각종 교구 활용한 놀이 프로그램) 2. 영아 기본생활, 대·소근육 운동, 인지·언어·사회정서 영역 발달지원서비스 - 자녀의 인지, 의사소통, 언어발달, 사회·정서적 발달 가능한 활동 프로그램 ※ 집단규모 ① 1:6 (13~24개월 영아의 (조)부모 + 자녀) ② 1:12((조)부모 + 만 3~7세 자녀)					
	제공 장소	기관방문형	제공주기	월4회 (주1회)	제공시간	60분



**가사간병방문도우미 사업**

○ 신청자격

- 만65세 미만의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중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가사·간병이 필요한 자

**가사·간병 방문지원서비스 대상자**

- ①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② 6개월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질환자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중증질환 상병 해당자로, 최근 3개월이내 발행된 진단서 또는 소견서 첨부)
- ③ 희귀난치성질환자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희귀난치성 질환 상병 해당자로, 진단서 또는 소견서 첨부 단, "행복e음"을 통해 산정특례 등록여부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로 대체 가능)
- ④ 소년소녀가장, 조손가정, 한부모가정(법정보호세대)  
\* 이 경우 서비스대상자는 자녀·손자녀가 됨
- ⑤ 만65세미만의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 ⑥ 기타 시·군·구 구청장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부상으로 인한 장기 치료자 등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제외대상

**가사·간병 방문지원서비스 제외대상자**

- ① 국고로 지원되는 아래의 동일 또는 유사 돌봄서비스를 받고 있는 자  
-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 노인돌봄종합서비스  
-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만65세 미만 치매특별등급 포함)  
☞ 중복해당 여부는 서비스 수급자격 취득 여부가 아닌 서비스 이용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함
- ②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 입소자
- ③ 의료기관 입원중인 이용자(입원기간 동안만 서비스 불가) 단 입·퇴원일은 서비스 제공 가능



### ○ 서비스 내용

- 신체수발지원 : 목욕, 대소변, 옷 입기, 세면, 식사 등 보조
- 가사지원 : 청소, 식사준비, 양육보조 등
- 일상생활 지원 : 외출 동행, 말벗, 생활상담 등
- 건강 지원 : 체위변경, 간단한 재활운동 보조 등

### ○ 비용(본인부담금)

제공시간	소득수준	서비스 가격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월 24시간 (A형)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형)	월 355,200원	월 355,200원	면 제
	생계·의료급여 이외의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나형)		월 333,890원	월 21,310원
월 27시간 (B형)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형)	월 399,600원	월 387,610원	월 11,990원
	생계·의료급여 이외의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나형)		월 375,620원	월 23,980원
월 40시간 (C형)	65세미만 요양병원 퇴원한 의료급여 수급자	월 592,000원	월 592,000원	면 제

### ○ 신청방법

-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본인, 가족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이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 서비스제공기관

기관명	주소	전화번호
부산수영지역자활센터	수영구 구락로150, 2층 (망미동 191-1)	051-757-4034

### <법률홍닥터>



서민을 위해 찾아가는  
**법률주치의**가 되겠습니다.

#### 1] 법률홍닥터 제도는?

- ▶ 법무부와 지방자치단체·사회복지협의체가 함께 진행하는 사업으로서, 법률홍닥터가 지역거점기간에 상주하면서 취약계층을 비롯한 서민에게 1차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찾아가는 무료 법률서비스” 제도입니다.

※ 수영구는 2017.2.6.부터 법률홍닥터(변호사 1인)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수영구청에 상주하면서 구민(취약계층 우선)을 대상으로 무료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법률홍닥터는 법률 복지 서비스 제공 업무를 전담하는 법무부 소속 변호사입니다.

#### 2] 지원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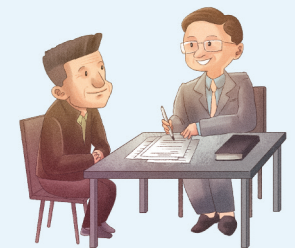
- ▶ 기초생활수급자 등 법률 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모든 주민(취약계층 우선)

#### 3] 지원내용(1차 법률서비스)

- ▶ 법률상담 및 정보제공
- ▶ 대상자 맞춤형 법 교육
- ▶ 소송방법 및 절차 안내
- ▶ 법률구조기관 등 도움 기관 연계

#### 4] 통합사례관리 법률지원

- ▶ 채무, 손해배상, 근로관련 상담
- ▶ 가정폭력 및 양육비 지급이행 상담
- ▶ 임대보증금 반환 등 기타법률 상담
- ▶ 상속, 유언관련 상담



#### 5] 신청방법 : 수영구청 기획감사실 내

법률홍닥터 상담실 051-610-4027로 전화 예약

# 아름다운 도시 행복한 수영

어디서,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  
모르시겠어요?



가까운 동 행정복지센터나 구청을 찾으세요.  
여러분의 고민을 한꺼번에 해결해 드립니다.



## 자활·장애인

- 자활근로사업 \_76
- 희망키움통장 I \_78
- 희망키움통장 II · 내일키움통장 \_79
- 청년희망키움통장 · 청년저축계좌 \_80
- 고용안정사업 \_81
- 장애인복지사업 \_83
-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_85
- 장애인 사회생활 및 자립지원 \_87
- 장애인 자동차 이용 편의 지원 \_92
- 수영구 장애인전담 민관협의체 \_94





## 자활근로사업

### ○ 자활사업의 목적

-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층의 자활능력 배양 및 안정된 일자리 제공
- 국가의 보호에 안주하는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생산적 복지 구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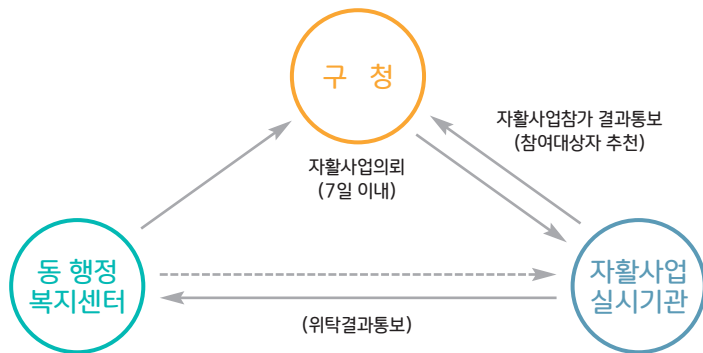
### ○ 자활사업 대상자

- 18세 이상 64세 이하의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 자활사업 참여종류

자활사업종류	실시기관구분	기준	판정대상자
고용노동부 자활사업	고용센터	·근로능력과 욕구가 높아 노동시장에서의 취업이 가능한 자	집중취업지원 대상자 80점이상
자 활 근 로	시장진입형	·자활근로프로그램 참여욕구가 높은 자 ·일용·임시직으로 작업경험이 있는 자	근로역량강화대상자 80점미만
	인턴·도우미형		
	사회서비스형		
근로유지형	시·군·구, 지역자활센터	·노동강도가 낮은 사업에 참여가능한 자 ·간병·양육 등 가구여건상 관내사업만 참여가능한 자	근로의욕증진 대상자 45점미만

### ○ 조건부수급자 자활의뢰 지원절차



### ○ 우리구 자활사업 추진현황

사업유형	자활사업단명	주요 사업 내용	근로시간	임금지급기준 (실비포함)
시장진입형	클린수	구청 및 구의회 청소	1일 8시간	1인 1일 56,950원
	깨끗한세상	도서관 등 공공기관 청소		
	바꿈터	재활용 선별		
	카페수 1,3호점	카페 운영		
	채움	도서 사서 파견		
	수마켓	수영 용품 매장 운영		
	희망나르미	정부양곡 배송		
청년자립도전	청년사업 개발 운영			
사회서비스형	택배수	우체국 택배 배송	1일 8시간	1인 1일 49,860원
	빨래수	빨래방 운영		
	어울림	공공빨래방 인력지원		
자활사례관리	게이트웨이	자활 교육, 상담, 자립경로 설정		
	자산형성지원사업	희망키움 I · II / 청년희망 / 내일키움/청년저축		
인턴·도우미형	자활·복지 도우미	사회복지 행정보조	1일 8시간	1인 1일 56,950원
	사회복지시설 도우미			1인 1일 49,860원
근로유지형	자활사업도우미	환경정비	1일 5시간	1인 1일 29,240원
시간제자활근로	깨끗한세상(일부)	도서관 등 공공기관 청소	1일 4시간	1인 1일 30,480원



## 희망키움 I·II,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 ○ 희망키움통장 I

- ▶ **근 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4(자산형성지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21조의2(자산형성의 대상 등)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제32조의4(자산형성지원의 신청 등)
- ▶ **대 상** : 일하는 생계, 의료수급 가구 중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이상인 가구
- ▶ **지원내용** : 가입자 본인이 매월 5만원 또는 10만원 저축하고, 유예기간 (3년 만기 후 3월) 이내 탈수급 시  
→ 본인 적립금 + 근로소득장려금 + 이자 지급

#### \*\* 근로소득장려금

- ① 5만원 적립 시 = [가구 총 소득 - (기준 중위소득 40% × 0.6)] × 0.43(장려율)
- ② 10만원 적립 시 = [가구 총 소득 - (기준 중위소득 40% × 0.6)] × 0.85(장려율)  
→ 해당 가구의 소득 증가에 비례하여 근로소득장려금이 많아지는 산식

#### ♣ 최대지원금 : 4인 가구(월소득 280만원 시)

- ▶ 본인저축 10만원 + 월 근로소득장려금 66만원  
= 월 76만원 ⇒ 3년간 약 2,736만원

\*\* 4인가구 근로소득 하한 1,170천원, 유지근로 상한 2,925천원

- ▶ **전액 지급해지 요건** : 3년 만기(3개월 유예) 후 탈수급(생계·의료) 시  
※ (만기성공) 만기 후 3월 유예기간 내 탈수급하지 못한 경우 1회에 한해 만기 축자금 성격의 근로소득장려금 일부  
\* 지급 가능(2015년도 가입자부터 적용)  
\* 해당 가구 근로소득장려금 적립 누적액의 5%
- ▶ **환수해지 요건** : 근로소득 6월 연속 미달, 6월 연속 본인적립금 미납 등

### ○ 희망키움통장 II

- ▶ **근 거** : 희망키움통장 I 과 동일
- ▶ **추진배경** : 기존에 생계·의료수급가구 및 자활사업 참여자들에 대한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키움통장 I, 내일키움통장)을 추진하고 있으나, 차상위 등 근로빈곤층에 대한 지원 방안 마련 필요
- ▶ **대 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기타 차상위계층으로서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 소득이 있는 가구  
→ 4인가구 경우 가입기준 소득상한 2,374천원, 유지기준 소득상한 3,324천원  
→ 자립역량교육(총 4회) 및 사례관리 연 2회(총 6회) 이수조건
- ▶ **지원내용** : 가입자가 근로활동을 계속 하면서, 매월 10만원 저축 + 근로소득장려금 적립(1:1매칭, 10만원)  
→ 3년간 통장유지시 - 본인 적립금 + 근로소득장려금 + 이자 지급

#### ♣ 지원예시 (3년 가입 시)

- ▶ 본인저축액(360만원)+근로소득장려금(360만원)+이자 = 720만원 + 이자 지원

- ▶ **전액 지급해지 요건** : 3년간 통장 유지, 교육 총 4회 및 사례관리상담 총 6회 이상
- ▶ **환수해지 요건** : 통장 가입 기간에 가구원 중 한명도 근로활동을 하고 있지 않거나 사전 중지 신청 없이 6월 연속 본인적립금 미납 시 등

### ○ 내일키움통장

- ▶ **근 거** : 희망키움통장 I 과 동일
- ▶ **대 상** : 신청 당시 최근 1개월 이상 연속 자활근로사업단 참여자(근로유지형 및 게이트웨이 불가)
- ▶ **지원내용** : 본인적립금(5/10/20만원)+내일근로장려금(5/10만원 1:1, 20만원 1:0.5) + 내일키움장려금(1:1 혹은 1:0.5) 및 내일키움수익금(소속사업단 매출발생 시 월 최대 15만원)

#### ♣ 최대 지원액 예시

- ▶ 본인저축(20만원) + 내일근로장려금(10만원) + 내일키움장려금(20만원) + 내일키움수익금(최대 월 15만원) = 월 65만원(3년간 약 2,340만원)

- ▶ **전액 지급 해지요건** : 통장 가입 후 3년 이내 탈수급 및 일반노동시장으로 취·창업, 대학 입·복학, 국가자격증 취득, 교육(총 4회) 및 사례관리(총 6회) 이수
- ▶ **환수해지 요건** : 자활근로 6월 연속 미참여, 6월 연속 본인적립금 미납 시, 교육 및 사례관리 상담 기준미달 등





○ 청년희망키움통장

- ▶ 근 거 : 희망키움통장 I 과 동일
- ▶ 대 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30% 이하인 가구의 일하는 청년\*(만 15세 ~ 39세)  
\*신청 월의 전월에 만 15세가 된 자 ~ 신청 월에 만 40세가 되는 자
- ▶ 지원내용 : 매월 근로·사업활동 + 유예기간(3년 만기 후 3월) 이내 탈수급 시 + 근로소득공제금 + 근로소득장려금 지원(청년 총 소득 × 0.45) 지원

♣ 가입한 청년의 월소득 115만원 이상 최대 지원액 예시

- ▶ 근로소득공제금 10만원 + 월 근로소득장려금 53만원 = 월 63만원  
→ 3년간 약 2,268만원

- ▶ 전액 지급 해지조건 : 3년 만기 후 연속 3개월 이상 생계급여 탈수급 시 (3월 유예기간 내 연속 3개월 이상 생계급여 탈수급 시)
- ▶ 환수해지 요건 : 3년 만기 후 3월 유예기간 내 생계급여 탈수급하지 못한 경우

○ 청년저축계좌

- ▶ 근 거 : 희망키움통장 I 과 동일
- ▶ 대 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기타 차상위계층으로서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청년\*(만 15세 ~ 39세)  
\* 신청 월의 전월에 만 15세가 된 자 ~ 신청 월에 만 40세가 되는 자, 가구당 1인 가입가능
- ▶ 지원내용 : 매월 10만원 + 3년간 근로활동 지속 + 교육이수(연 1회, 총 3회) 및 국가공인자격증 취득 시  
→ 본인 적립금 + 근로소득장려금(1:3 매칭, 30만원) + 이자 지급

♣ 최대 지원액 예시

- ▶ 본인저축액 10만원 + 근로소득공제금 30만원 = 월 40만원  
→ 3년간 약 1,440만원

- ▶ 전액 지급 해지조건 : 3년 만기 후 국가공인자격증 취득 및 교육(총 3회)이수
- ▶ 환수해지 요건 : 3년 만기 후 국가공인자격증 미취득, 교육이수 기준 미달

고용안정사업

○ 일자리종합센터 운영

- ▶ 대 상 : 구인·구직을 원하는 구민 누구나
- ▶ 장 소 : 수영구 남천동로 100, 수영구청 1층  
☎ (051) 610-4826~4831
- ▶ 주요업무 : 구직자 맞춤형 취·창업 상담, 일자리 및 직업훈련 정보 제공, 구인구직 만남의 날, 창업아카데미 등 취·창업 서비스 지원
- ▶ 문 의 : 취업 (051) 610-4826~30 / 창업 (051) 610-4531  
경력단절여성상담 (051) 610-4508

○ 공공근로사업 추진

- ▶ 대 상 : 사업개시일 현재 만 18세이상인 근로능력자로서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이면서 재산이 3억원 이하인 자
- ▶ 사업기간 : 분기 1회, 약 3개월, 근로일수 약 50일
- ▶ 모집시기 : 매년 3, 6, 9, 12월 초에 접수(연간 총 4회 실시)
- ▶ 구비서류 : 신분증, 신청서(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정보제공동의서, 장애인복지카드 등
- ▶ 접 수 처 :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접수
- ▶ 사업분야 : 4대 주요사업(정보화·공공시설관리·서비스지원·환경정화)
- ▶ 근로조건

구분	일반노무 (만65세 미만)	청년전산화 (만39세 이하)
근무시간	주 4일, 1일 6시간	주 5일, 1일 7시간
1일 근로임금	52,320원 (=8,720원×6시간)	61,040원 (=8,720원×7시간)
교통비	5,000원	5,000원
주차 수당 (한달 기준)	209,280원 (=52,320원×4회)	244,160원 (=61,040원×4회)
연차 수당	104,640원 (=52,320원×2회)	122,080원 (=61,040원×2회)

※ 점심 휴식시간 : 1시간 (12:00~13:00)



○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

- ▶ 대 상 : 사업개시일 현재 만18세 이상인 근로능력자로서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0%이하이면서 재산이 3억원 이하인 자
- ▶ 사업기간 : 연 2회 실시(상반기 : 2~7월, 하반기 : 7~12월)
- ▶ 모집시기 : 1월, 6월(연간 총 2회실시)
- ▶ 구비서류 : 신분증, 신청서(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정보제공동의서, 장애인복지카드 등
- ▶ 접 수 처 :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접수
- ▶ 사업유형 : 4대 유형 9개 사업
  - 1유형(지역자원 활용형)  
: 지역특산물 상품화 및 전통기술 습득사업, 시책일자리 사업, 자원재생사업
  - 2유형(지역기업 연계형)  
: 공동작업장 운영사업, 중소기업 취업지원사업
  - 3유형(서민생활 지원형)  
: 취약계층 접수리 지원사업, 다문화가정 지원사업
  - 4유형(지역공간 개선형)  
: 마을 가꾸기 및 지역 유휴공간·시설활용사업

▶ 근로조건

구분	일반노무 (만65세미만)
근무시간	주 5일, 1일 6시간
1일 근로임금	52,320원 (=8,720원×6시간)
교통비	5,000원
주차 수당 (한달 기준)	209,280원 (=52,320원×4회)
연차수당	261,600원 (=52,320원×5회)

※ 점심 휴식시간 : 1시간 (12:00~13:00)

**장애인복지사업**

○ 장애인 등록현황 (2021.1월 기준)

▶ 우리구 등록 장애인 현황 : 15종 8,179명

유형	지체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뇌병변	정신	신장	심장	호흡기	간	안면	장루	뇌전증
인원	3,534	865	1,152	72	488	142	952	362	415	22	47	43	12	58	15
비율	43.2	10.6	14.08	0.88	5.97	1.74	11.64	4.43	5.07	0.27	0.57	0.53	0.14	0.70	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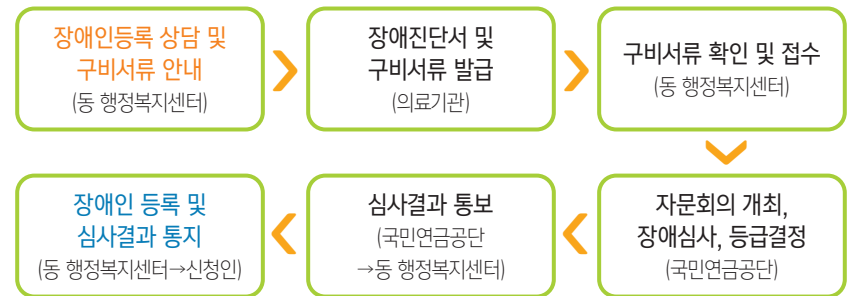
↳ 가장 많음(43.2%)

↳ 발달장애인 630명(7.71%)

○ 장애정도별 현황

구분	계	심한 장애	심하지 않은 장애
계	8,179명(100%)	3,096(37.9%)	5,083(62.1%)
남자	4,701명(57.5%)	1,827명	2,874명
여자	3,478명(42.5%)	1,269명	2,209명

○ 등록절차



○ 등록진단비 지원

- ▶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로서 신규등록 장애인 및 의무적 재판정 대상자
- ▶ 지원기준 : 기준내에서 지원하고 추가 검사비용은 자부담
  - 지적장애 및 자폐성장애 : 4만원
  - 기타 장애 : 1만 5천원



### ○ 검사비 지원

- ▶ 지원대상 :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 재판정을 받아야 하는 등록 장애인
- ▶ 지원액

#### < 검사비지원액 구분표 >

장애인연금 및 활동지원, 중증장애아동 수당 신청 및 의무재판정으로 재진단을 받는 자	진단비, 검사비 포함하여 소비비용이 총 10만원 이하의 범위내에서 지원가능
직권재진단대상자	소득기준에 관계없이 총 10만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진단비, 검사비 지원가능

#### 장애인 등급제 폐지('19.7.1.시행)

- 장애인 등급제 폐지 : 1~6급 ⇒ 2단계(장애의 정도가 심한/심하지 않은)
  - 서비스 단계적 확대 : 활동지원 등 23개 국가서비스
- 서비스 지원 기준 개편 :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도입 및 단계적 확대
  - 장애인의 서비스 필요도를 파악하여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 지원
  - ('19.7월) 활동지원 서비스, 보조기기 교부 등
  - 종합조사 단계적 확대 : 서비스 특성에 맞는 종합조사 추가 개발·적용
  - ('20년) 이동지원 분야(특별교통수단) / ('22년) 소득·고용지원 분야(장애인 연금)
- 장애인 전달체계 구축 : 상담 및 사례관리 강화
  - 찾아가는 상담 대상 확대 및 지역사회 관련 기관 동행 상담
  - 장애인 중심 사례관리 강화(장애인 전담 민관협의체 운영)

###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 ○ 장애인 연금

- ▶ 지급대상 : 만 18세 이상 등록 중증장애인(1, 2급 및 3급 중복장애인)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 ▶ 지원내용

대상자	연령	기초급여		부가급여
		단독	부부	
재가수급자	18~64세	300,000	240,000	80,000
	65세 이상	-	-	380,000
보장시설수급자	18~64세	300,000	240,000	-
	65세 이상(특례)	-	-	70,000
차상위	18~64세	300,000	240,000	70,000
	65세 이상(특례)	-	-	140,000
	65세 이상(일반)	-	-	70,000
차상위초과	18~64세	300,000	240,000	20,000
	65세 이상	-	-	40,000

### ○ 장애수당

- ▶ 지급대상 : 만 18세 이상의 등록장애인(중전 3~6급)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 지원내용

구분	급여액
기초수급자(생계, 의료)	월 4만원
기초수급자(주거, 교육), 차상위	월 4만원
보장시설수급자	월 2만원

- ▶ 지원개시일 : 기존 등록장애인일 경우-장애수당 신청일/생계 또는 의료급여수급자(당연적용대상자)가 추후 신규로 장애인 등록을 한 경우 - 장애등급 결정일



### ○ 장애아동 수당

- ▶ 지원대상 : 만 18세 미만의 등록장애인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 지원내용

구분	급여액	경증장애인
기초수급자(생계, 의료)	월 4만원	월 10만원(중증: 월 20만원)
기초수급자(주거, 교육), 차상위	월 4만원	월 10만원(중증: 월 15만원)
보장시설수급자	월 2만원	월 2만원(중증: 월 7만원)

- ▶ 지원개시일 : 장애아동수당 신청일

### ○ 장애인 재활수당

-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기초생활수급자로서, 1~2급 장애인 또는 3급 다른 장애가 중복된 자 (단, 보장시설 입소장애인, 특례수급장애인, 장기입원자는 제외)
- ▶ 지원내용 : 월 3만원
- ▶ 지원개시일 : 장애수당 신청일

### ○ 장애인 의료비 지원

- ▶ 지원대상 :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2종,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인 등록 장애인
- ▶ 지원내용
  - 1차 의료급여기관 진료 본인부담금 중 750원
  - 2차, 3차 의료급여기관 진료시 본인부담 진료비 전액
- ▶ 지원절차 : 진료시 의료급여증과 장애인등록증 제시

### ○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 ▶ 지원대상 : 등록된 여성장애인 중 출산 및 유산·사산한 자
- ▶ 지원내용
  - 출산(유산·사산 포함) 시 태아 1인 기준 1백만원 지원
- ▶ 지원절차 : 신청자 신분증, 신청서, 출생증명서 또는 주민등록 등본을 구비하여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 장애인 사회생활 및 자립지원

### ○ 장애인 활동지원사업(바우처)

- ▶ 신청대상 : 만 6세~65세 미만 등록장애인
- ▶ 활동지원급여 : 15등급으로 구분하여 월 60~480시간 지원 (시간당 14,020원 바우처)
- ▶ 대상자 선정 : 방문조사(국민연금공단) → 심의(시·군·구 수급자격 심의위원회) → 선정(시·군·구)
- ▶ 지원내용 : 활동지원사가 방문하여 신체, 가사, 이동보조 등의 서비스 제공
- ▶ 지원비용 : 소득수준에 따라 본인부담금 차등 (기초수급 면제, 차상위 2만원, 최대 월 170,700원)

### ○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바우처)

- ▶ 신청대상 : 뇌병변·지적·자폐성·청각·언어·시각장애인 중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
- ▶ 대상자 선정 : 신청 및 접수(읍·면·동) → 상담 및 조사(읍·면·동) → 대상자선정(시·군·구) → 통지
- ▶ 지원내용
  - 언어·청능, 미술·음악·행동·놀이·심리운동·재활심리, 감각·운동 등 발달 재활서비스 제공
  - 장애 조기 발견 및 발달진단서비스, 중재를 위한 부모 상담 서비스
- ▶ 지원비용 : 소득기준에 따라 본인부담금 차등

소득기준	총 구매력	바우처 지원액	본인부담금
기초생활수급자(다형)	월 22만원	월 22만원	면제
차상위 계층(가형)		월 20만원	2만원
차상위 초과 기준 중위소득 소득 65% 이하(나형)		월 18만원	4만원
기준 중위소득 65%초과 120% 이하(라형)		월 16만원	6만원
기준 중위소득 120%초과 180% 이하(마형)		월 14만원	8만원



### ○ 장애부모 자녀 언어발달지원사업(바우처)

- ▶ 신청대상 : 만12세 미만의 비장애아동(한쪽부모 및 조손가정의 한쪽 조부모가 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 등록장애인)
- ▶ 대상자 선정 : 신청 및 접수(읍·면·동) → 상담 및 조사(읍·면·동) → 대상자선정(시·군·구) → 통지
- ▶ 지원내용
  - 언어발달진단서비스
  - 언어재활, 청능재활 등 언어재활서비스 및 독서지도, 수어지도
- ▶ 지원비용 : 소득기준에 따라 본인부담금 차등

소득기준	총 구매력	바우처 지원액	본인부담금
기초생활수급자(다형)	월 22만원	월 22만원	면제
차상위 계층(가형)		월 20만원	2만원
차상위 초과 기준 중위소득 소득 65% 이하(나형)		월 18만원	4만원
기준 중위소득 65%초과 120% 이하(라형)		월 16만원	6만원

### ○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사업(바우처)

- ▶ 신청대상 : 지적·자폐성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녀의 부모 및 보호자(2촌 이내)
- ▶ 대상자 선정 : 신청 및 접수(읍·면·동) → 상담 및 조사(읍·면·동) → 대상자선정(시·군·구)
- ▶ 지원내용 : 발달장애인 부모 및 보호자에게 전문심리상담 서비스 제공
  - 회당 50~100분, 월 3~4회 이상, 12개월 간 제공
- ▶ 지원비용 : 1인당 월 200천원 이하

### ○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사업(바우처)

- ▶ 신청대상 : 만 18세 이상 ~ 만 65세 미만의 지적 및 자폐성 장애인
- ▶ 대상자 선정 : 신청 및 접수(읍·면·동) → 신청자 송부(시·군·구) → 조사 실시 및 결과송부(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 심의(시·군·구 수급자격 심의위원회) → 선정 및 통지
- ▶ 지원내용 : 이용자 욕구에 기반하여 주간활동 바우처 제공
- ▶ 지원비용
  - 서비스 제공단가 : 기본단가 13,500원, 그룹별(2~4인) 차등단가 적용

	2인 그룹	3인 그룹	4인 그룹
적용요율	100%	80%	70%
그룹당 총 지급률	200%	240%	280%

※ 주간활동서비스 급여유형에 따라 활동지원서비스 급여량 차감

구분	단축형	기본형	확장형
주간제공시간	56시간	100시간	132시간
활동지원금액	-	▲40시간	▲72시간

### ○ 청소년발달장애인학생 방과후활동서비스지원(바우처)

- ▶ 신청대상 : 만 12세이상 만 18세 미만으로 일반 중·고등학교, 특수학교(중·고등학교에 해당하는 학급) 재학 중인 지적 및 자폐성 장애인
- ▶ 대상자 선정 : 신청 및 접수(읍·면·동) → 상담 및 조사(읍·면·동) → 대상자선정(시·군·구) → 통지
- ▶ 지원내용 : 중·고등학교 발달장애학생에게 방과후(최대 3시간) 및 토요일(최대 4시간) 방과후활동 서비스 바우처 월 44시간 제공함.
- ▶ 지원비용
  - 서비스 제공단가 : 기본단가 13,350원, 그룹별(2~4인) 차등단가 적용

	2인 그룹	3인 그룹	4인 그룹
적용요율	100%	90%	80%
그룹당 총 지급률	200%	270%	320%



### ○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사업

- ▶ 신청대상 : 만 19세 이상 발달장애인 및 긴급하게 후견이 필요하다고 지자체·법원에서 판단한 기타 유형 장애인
- ▶ 선정 절차 : 신청 → 대상자선정(시·군·구) → 심판절차비용지급(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 후견인후보자선정(시·군·구/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공공후견법인) → 후견심판청구준비(시·군·구/지역 발달장애인지원센터, 공공후견법인) → 후견심판청구
- ▶ 지원내용 : 후견심판청구 지원 및 공공후견인 활동 지원
- ▶ 지원비용
  - 후견심판청구 : 실비(1인당 연간 최대 50만원)
  - 공공후견인 활동 : 월 15만원(월 최대 40만원)

### ○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

- ▶ 신청대상 : 지체·뇌병변·시각·청각·심장·호흡·지적·자폐성·언어 장애인으로서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 교부 절차 : 장애인보조기기 교부 신청(읍·면·동) → 자격기준 검토 및 서비스지원 종합조사(국민연금공단) → 장애인보조기기 교부 결정(시·군·구) → 장애인보조기기 교부 → 장애인보조기기 교부의 비용 청구 및 지급 → 검수 및 사후관리
- ▶ 지원내용 : 저소득 장애인에게 일상생활에 필요한 장애인보조기기를 지원
- ▶ 지원비용 : 품목별 최소 2만원~ 최대 150만원

### ○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 ▶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 가구의 성년 등록 장애인

가구별 월소득 인정액 기준	2020년 대상자 선정 기준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8인 이상
	878,597 원 초과 1,757,194 원 이하	1,495,990 원 초과 2,991,980 원 이하	1,935,289 원 초과 3,870,577 원 이하	2,374,587 원 초과 4,749,174 원 이하	2,813,886 원 초과 5,627,771 원 이하	3,253,184 원 초과 6,506,368 원 이하	3,694,858 원 초과 7,389,715 원 이하	1인 증가시 마다 최소값은 441,674원 씩 최대값은 883,347원 씩 증가

- ▶ 대여조건
  - 대출한도 : 가구당 2,000만원 이내(무보증 대출 : 가구당 1,200만원 이하, 보증대출 : 가구당 2,000만원 이하, 담보대출 : 담보범위 내(5,000만원 이하))
  - 대여자 : 금리 최고 연 3.0%, 5년 거치, 5년 상환
  - 신청 : 거주지 동 행복센터
- ▶ 지원용도 : 생업자금, 출퇴근용 자동차 구입비, 기술훈련비, 장애인보조기구 구입비, 사무보조기구입비, 자기개발훈련비, 의료비, 기타

### ○ 장애인 일자리 사업

- ▶ 신청대상 : 만 18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미취업 장애인
- ▶ 사업종류 및 배치기관

사업유형	근무시간	월급여	배치기관	보험 가입	배치인원
전일제	주5일/일8시간	1,822,480원	가족행복과 외 17개	4대 보험	23명
시간제	주5일/일4시간	911,240원	수영구도서관 외 7개	4대 보험	16명
복지일자리	주14시간	488,320원	남부산우체국, 장애인협회	고용·산재 보험	43명

- ▶ 지원내용 : 취업 취약계층인 장애인에게 일자리 제공을 통한 사회참여 및 소득보장
- ▶ 지원비용 : 기본급여액에서 4대 보험 본인부담금, 소득세를 제외하고 지급



## 장애인 자동차 이용 편의 지원

### ○ 장애인자동차 표지 발급

- ▶ 지원대상 : 장애인 본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법」제7조에 따른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같이 하면서 함께 거주하는 직계 존·비속이나 배우자, 형제·자매,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의 배우자 및 자녀 명의로 등록하여 주로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1대
- ▶ 지원내용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주차가능 표지부착차량에 한함), 10부제 적용제외,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지방자치단체 조례의 의거) 등
- ▶ 신청 :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 ▶ 기능별 종류
  - 장애인의 보행상 장애유무에 따라 「주차기능」과 「주차불가」로 구분
  - ① 기본A형                      ② 재외동포 및 외국인(B형)
  - ③ 대어 및 리스차량(C형)    ④ 장애인 복지법상 관련기관(D형)

### ○ 장애인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 ▶ 지원대상 : 장애인 표지 발급 대상자 중에서 2000cc 이하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배기량 제한없음), 승차정원 12인승 이하의 승합차(배기량 제한없음),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의 화물자동차(배기량 제한없음),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의 전기자동차 및 같은조 제6호의 연료전기자동차
  - ※ 단, 경차와 영업용, 대여사업용, 법인용 차량은 제외
- ▶ 신청방법 : 운전면허증, 자동차등록증, 수수료 4,000원
- ▶ 이용절차 : 고속도로 요금 정산소에서 통행권과 할인카드 제시 → 자동차 표지 및 할인카드상의 장애인 탑승유무 확인 후 통행료 할인

### ○ 자동차 관련 시책

구분	지원대상	지원내용	
장애인용 차량에 대한 취득세(중전 등록세 포함)·자동차세 면제	차량 명의를 중증장애인(시각4급은 자치단체 감면 조례에 의함) 본인이나 그 배우자 또는 주민등록표상 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는 직계 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 중 1인과 공동명의로 등록된 차량 1대 • 2000cc 이하의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 • 15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 • 1톤 이하 화물자동차 • 이륜자동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취득세(중전 등록세 포함)·자동차세 면제(구청 세무과 신청)</li> <li>• 구비서류 : 감면신청서, 장애인 등록증, 자동차등록증 사본, 주민등록표 등본</li> </ul>	
시내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장애인이 탑승한 차량</li> <li>※ 장애인 복지카드 제시</li> </ul>	전액면제	50% 감면
		광안대로, 백양터널, 수정산터널, 을숙도대교	거가대교, 부산항대교, 산성터널, 천마산터널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인 자동차 표지 부착하고 장애인이 탑승한 차량</li> <li>※ 장애인 복지카드 제시</li> </ul>	1시간 이내 면제 (1시간 초과 시 주차료 50% 감면)	
자동차 검사 수수료 할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한 등록장애인 본인 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보호자의 명의로 등록된 비사업용 자동차 1대</li> <li>• 승용차</li> <li>• 12인승 이하 승합차</li> <li>• 적재량 1톤 이하 화물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 수수료의 30~50% 할인</li> <li>- 중증 : 50%</li> <li>- 경증 : 30%</li> <li>※ 검사수수료 할인은 교통안전공단 검사소에서만 가능</li> </ul>	

## 수영구 장애인전담 민관협의회

- ▶ 목적
  - 장애인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지역사회내 민간부문과의 협력 강화
  - 복합문제를 가진 장애인가구에 대한 사례관리 강화
- ▶ 법적근거 : 「장애인복지법」제32조의 7(민관협력을 통한 사례관리)
- ▶ 민관협의회 구성 : 10명(위원장 1, 임기 2년)
- ▶ 기능
  - 장애인 특성을 반영한 지역사회 자원 발굴 및 연계
  - 지역사회 서비스 연계를 통한 사례관리 지원
  - 고난도 사례에 대한 다각적 논의 및 슈퍼비전 제공을 통해 전문적인 사례관리 실시
- ▶ 2020년 수영구장애인전담 민관협의회 회의 개최



# 노인·영유아·여성·보건

- 기초연금 \_96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 \_97
-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돌봄미 사업 \_99
- 독거노인스마트안부알리미서비스 \_100
- 노인의료복지시설 입소 \_101
- 노인기타사업 \_102
- 아동복지사업 \_103
- 출산장려정책 \_108
- 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 \_114
-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_116
- 방문건강관리사업 \_117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_118
- 보건사업 \_119







## 행복한 노후, 힘이 되는 기초연금

### ○ 선정기준

- ▶ 국가발전과 자녀 양육에 힘쓰신 어른들의 노후생활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고자 만 65세이상,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어르신에게 매월 최대 300,000원 (부부수급자 48,000원) 기초연금 지급

### ○ 신청자격

- ▶ 만 65세이상으로 주민등록상 생일이 돌아오기 한 달 전부터 신청 가능  
예) 1956년생으로 2021년 4월 20에 만 65세가 되시는 분은 2021년 3월부터 신청 가능
- ▶ 소득인정액 월169만원 이하 (단독가구 기준, 부부가구는 월270.4만원 이하)

### ○ 혜택내용

- ▶ 단독가구는 월 최대 300,000원, 부부가구는 월 480,000원

가구유형	혜택내용
단독 수급가구	소득하위 70%최소30,000 ~최대 300,000원
부부 1인 수급가구	
부부 2인 수급가구	소득하위 70%최소60,000 ~최대 480,000원

\* 소득 및 재산조사 결과에 따라 소득인정액 구간별 급여 차등지급

※ 국민연금급여액 및 A급여액에 따른 기초연금액 산정 예시

국민연금급여액 기준	국민연금 A급여액 기준	기초연금 급여수준
기초연금액의 150% (450,000원) 이하	또는 기초연금액 75%(225,000원) 이하	→ 300,000원 (기초연금액)
기초연금액의 150% (450,000원) 초과	이고 기초연금액 75%(225,000원) 초과 ~기초연금액 150%(450,000원) 미만	→ 150,000원 ~300,000원 사이
기초연금액의 200% (600,000원) 초과	이고 기초연금액 150%(450,000원) 초과	→ 150,000원 (부가연금액)

### ○ 신청방법

- ▶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가까운 국민연금관리공단
- ▶ 구비서류 : 신분증, 본인통장 (지급계좌), 신청서,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전·월세 계약서, 기타 소득 관련 서류 등 ☞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 작성 제출
- ▶ 문 의 처 :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구청 가족행복과(610-4364), 기초생활보장과(051)610-4291~7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

### ○ 지원대상

- ▶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수급자로서 유사 중복사업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자
  - 독거·조손·고령부부 가구 노인 등 돌봄이 필요한 노인
  - 신체적 기능 저하, 정신적 어려움(인지저하, 우울감 등)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노인
  - 고독사 및 자살 위험이 높은 노인(특화서비스)
    - 우리구 2021년 지원 예상 인원 : 1,566명

### ○ 제외대상

- ▶ 가정봉사원, 노-노케어, 간병인 등에 의하여 정기적인 서비스 지원을 받고 있어 노인돌봄 서비스가 필요 없는 독거노인은 제외
- ▶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사간병도우미서비스, 장애인활동지원 받고 있는 독거노인은 사업대상자에서 제외
- ▶ 국가보훈처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이용자 제외
- ▶ 기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서비스 중 노인맞춤돌봄서비스와 유사한 재가서비스

### ○ 지원내용

- ▶ 서비스 이용시간 : 일반돌봄군(16시간 미만), 중점돌봄군(16시간이상~40시간 미만)
- ▶ 지원내용 : 방문형, 통원형(집단 프로그램) 등의 직접서비스 및 연계 서비스 제공
  - 직접서비스 : 안전지원, 사회참여, 생활교육, 일상생활지원
  - 연계 서비스(민간후원 자원) : 생활지원연계, 주거개선연계, 건강지원연계, 기타서비스 등
  - 특화서비스 : 은둔형·우울형 노인을 대상으로 척도(우울감, 자살생각, 고독감 등)등을 활용하여 개별 맞춤형 상담 및 집단활동 제공
  - 사후관리 서비스 : 정기적인 모니터링 및 자원연계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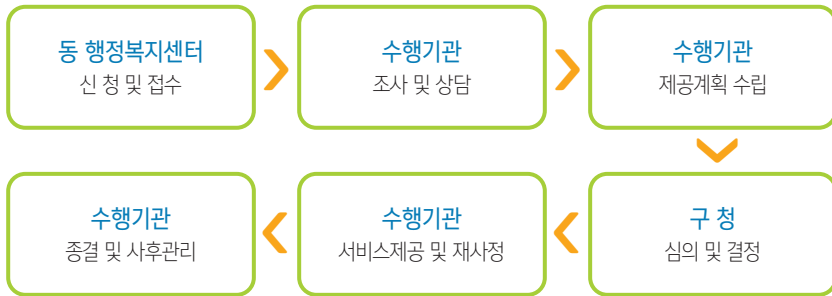
### ○ 서비스 제공기간 : 승인 익일부터 1년



○ 서비스 제공기관

권역	행정동	수행기관
1권역	남천1·2동, 광안2동, 민락동	수영구노인복지관
2권역	수영동, 망미1·2동	수영재가노인복지관
3권역	광안1·3·4동	광안노인복지관

○ 지원절차



- ▶ 접수처 :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 ▶ 문의처 :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구청 가족행복과(610-4364) 및 수행기관  
(수영구노인복지관 759-6070 / 수영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912-7275 / 광안노인복지관 715-6099)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돌보미사업**

○ 지원대상

- ▶ 독거노인(만65세 이상 실제 독거 가구)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노인으로서 치매 또는 치매고위험군 (보건소 치매진단검사 의뢰자)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중 상시안전확인이 필요한 대상으로 아래의 사항 중 하나에 해당
    - 건강이 거동 불편한 수준으로 정기적 투약관리가 필요한 자
    - 특화서비스 대상자로 정서지원이 필요한 자
    - 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중 학습을 통해 디지털 기기 사용 가능한 자
  - 지자체 장이 생활여건, 건강상태등을 고려하여 상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 ▶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로, 독거, 취약가구, 가족의 직장·학교생활 등으로 상시보호요 대상)
  - 1순위 : 최중증 독거·취약가구 및 중증 독거가구 수급자
  - 2순위 : 중증 취약가구 및 활동지원 수급자로서 생활환경상 상시 보호가 필요한 중증장애인
  - 1·2순위 대상자 외 지자체의 장이 생활여건을 고려하여 상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비수급 중증장애인(1~3급)
    - 제외대상 : 정부(지자체) 재정이 투입되어 24시간 활동지원을 받고 있는 중증장애인

○ 지원내용

- ▶ 독거 노인·중증장애인 가구 댁내장비 설치·운영
  - 댁내장비 : 게이트웨이, 응급호출기, 화재·가스·활동·출입감지센서
  - 장애인 추가장비 : 간이소화용구
- ▶ 댁내장비 전송정보 모니터링
  - 독거노인·중증장애인 가구로부터 전송된 응급상황 정보에 대해 실제 응급상황 발생여부 및 안전 확인
- ▶ 정기적 안전확인 및 장비점검
- ▶ 지역사회 응급 안전망 구축

○ 문의처

- 독거노인응급 : 구청 가족행복과(610-4364), 수영구노인복지관(759-6070)
- 장애인 응급 : 구청 가족행복과(610-4164)



## 독거노인스마트안부알리미서비스

### ○ 지원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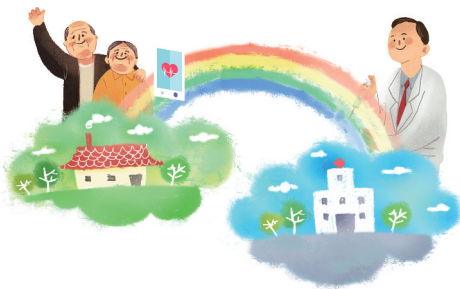
-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중 실제 혼자 살고 있는 노인으로서,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어르신
  - 일상적 위험에 매우 취약하여 24시간 안전확인이 필요한 저소득 노인
  - 응급상황 발생시 보호자와의 연락을 통하여 즉각적인 대처가 필요한 저소득 노인
- 우리구 2021년 지원예상인원 : 230명

### ○ 지원내용

- ▶ 유선TV 셋업박스 설치 후 TV시청 패턴을 분석하여, 일정시간 이상 패턴에서 벗어날 시 위기상황으로 인지하고 생활지원사를 통하여 즉각적인 안전확인을 실시하는 서비스

### ○ 신청

- ▶ 문의처 : 구청 가족행복과(610-4364), 수영구노인복지관(759-6070)



## 노인의료복지시설 입소

### ○ 대상

- ▶ 65세 이상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판정자(1~2등급, 3~5등급 중 시설급여 대상자)

### ○ 구비서류

- 입소이용신청서
- 표준 장기요양 이용계획서
- 장기요양인정서

### ○ 신청자 자격 : 본인, 가족, 시설관계자, 관계공무원 등

### ○ 이용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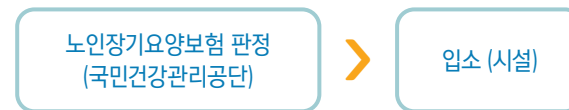
- 국민기초수급권자 : 본인부담 없음
- 기타 의료급여수급권자 : 본인부담 10%
- 일반인 : 본인 부담 20%

### ○ 입소절차

- 국민기초수급권자 및 기타 의료급여수급권자



- 일반인



### ○ 문의처 : 구청 가족행복과(610-4365)



## 노인가타사업

## 아동복지사업

###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 ▶ 대상 :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 어르신(시장형사업 60세 이상)
- ▶ 사업종류 : 지하철안전도우미, 노노케어, 심터순회돌보미, 갈맷길 이야기 등 56개
- ▶ 근무조건 : 월 30시간 이내, 월 27만원, 11개월 (사업단별로 연중)
- ▶ 접수 : 12월 중 공개모집 후 1~2월 부터 사업시행
- ▶ 신청처 : 사업수행기관
  - 대한노인회수영구지회, 홀트수영종합사회복지관, 해누리노인복지공동체, 수영구노인복지관, 수영구시니어클럽

### ○ 재가노인지원서비스

- ▶ 대상 :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외 자 중 기초수급자 및 저소득 노인
- ▶ 지원서비스 : 일상생활지원, 정서지원, 주거환경개선지원, 서비스연계지원, 긴급지원 등
- ▶ 신청처 : 남천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638-6917), 수영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751-7272)

### 노인취업알선센터 설치운영

- 운영시간 : 연중 (09:00~18:00)
- 신청처 : 고령인력종합복지센터 1577-1960  
대한노인회 취업지원센터 622-1987



### ○ 드림스타트사업

- ▶ 사업지역 : 수영구 전지역
- ▶ 사업대상 :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정, 보호대상한부모가정(조손가정 포함)의 0세(임산부) ~ 만12세(초등학생 이하) 아동과 그 가족
- ▶ 사업내용 : 대상자의 복합적인 욕구를 파악하여 지역자원과 연계한 맞춤형 통합 서비스 제공
  - 인적조사 및 사정을 통해 대상자의 욕구 및 문제를 파악하여 보건, 복지, 보육(교육) 등 필요한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주기적인 모니터링 실시
- ▶ 이용방법 : 접수(전화 및 방문상담) → 사정(육구조사, 양육환경 및 아동발달사정) → 사례관리(계획, 서비스 제공, 점검) → 종결
- ▶ 문의 : 수영구 드림스타트(610-4480~4)

### ○ 가정위탁아동 지원

- ▶ 가정위탁아동 : 부모의 질병, 가출, 사망, 수감 등으로 인하여 보호가 필요한 아동
- ▶ 생활보장
  - 수급자 지정, 기본 생계비 및 아동 양육비 지원(1인 월 20만원)
  - 교육비지원(수업료, 대학입학금전액), 문화체험활동비 지원(1인 10만원)
  - 상해보험료 가입 지원
- ▶ 자립지원 : 무주택 가정으로 전세자금 지원, 자립정착금 1인당 600만원
- ▶ 문의
  - 가정위탁 양육수당 : 구청 복지정책과(610-4614)
  - 관할구역 광안1·2·3·4동, 남천1·2동(610-4616)
  - 관할구역 수영동, 민락동, 망미1·2동(610-4609)



### ○ 아동급식 지원

- ▶ 지원대상 : 저소득계층 중 가정환경상 식사 제공이 어려워 결식 우려가 있는 다음의 가정의 아동
  -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차상위 계층 아동
  - ②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아동
  - ③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 ④ 보호자가 사망, 가출, 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자가 없는 가구의 아동
  - ⑤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하거나 보호자로부터 방임·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하여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
  - ⑥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2% 이하인 가구의 아동
  - ⑦ 위 각호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최저건강보험료 납부액 이하 가구 아동 또는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이·통반장, 담당공무원 등이 추천한 아동
    - 지원내용 : 방학 중 급식지원, 토·공휴일 급식지원
    - 지원방법 : 일반음식점, 지역아동센터 이용
    - 신 청 : 동 행정복지센터
    - 문 의 : 동 행정복지센터, 구청 복지정책과(610-4611)

### ○ 아동발달 지원계좌 개설

- ▶ 지원대상 : 만18세미만의 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장애인시설아동, 가정 위탁·소년소녀가정아동,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의 아동
- ▶ 지원내용 : 아동이 일정액을 적립하면 그 금액만큼 매칭금 지원 (월 최대5만원)
- ▶ 신 청 : 동 행정복지센터
- ▶ 문 의 : 구청 복지정책과(610-4611)

### ○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

- ▶ 지원대상 : 출산(예정) 후 미혼 또는 이혼 한 부모로서 아래 선정기준을 충족한자 단, 지원기간동안 입양(동의) 사실이 없을 것

#### <선정기준>

- 출산(예정) 여부 : 출산(예정)일 전 40일 또는 후 7일 이내에 있는 자
- 혼인 여부 : 혼인관계증명서 상 혼인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
  - ※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 '탈북산모를 위한 산모도우미 지원사업' 등 출산 후 돌봄 지원 관련 유사사업과 중복금지

#### ▶ 지원내용

구분	지원내용	지원단가
① 가정 내 보호 지원	· 산후지원인력 가정방문 서비스 지원(1주)	· 500,000원 - 산후지원인력 서비스 이용료(40만원 한도) * 아동 생필품비 포함(10만원)
	· 가족 또는 친구 등 지인의 도움을 받기 원할 경우(1주)	· 350,000원 * 아동 생필품비 포함
② 미혼모자가족복지 시설 내 입소자 지원	· 미혼모자가족시설 입소 시, 산후지원 인력 인건비 지원(1주)	· 400,000원 - 산후지원인력 인건비 일부
③ 산후조리원 보호지원	· 1주 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	· 최대 700,000원 · 1주 이용료가 700천원 미만인 산후조리원의 경우, 실비 지원 * 아동 생필품비 및 생모 식료품비 등 포함

### ○ 보육료 지원

- ▶ 지원연령 및 기준일 : 2021년 3월 1일

연령	기준일 자	연령	기준일 자
0세아	2020.1.1. 이후 출생	만3세아	2017.1.1.~2017.12.31.
만1세아	2019.1.1.~2019.12.31.	만4세아	2016.1.1.~2016.12.31.
만2세아	2018.1.1.~2018.12.31.	만5세아	2015.1.1.~2015.12.31.

- ▶ 지원단가 : 2021년도 기준

연령	지원 단가 (원)	
	기본보육	24시간
만0세	484,000	726,000
만1세	426,000	639,000
만2세	353,000	529,500
만3세	260,000	360,000
만4세	260,000	390,000
만5세	260,000	390,000

- ▶ 신청절차 : 신청(보호자) → 결정(구·군) → 통보(구·군)



### ○ 영유아 보육료

- ▶ 만 0세 ~ 만 5세 보육료
  - 지원대상 : 만 0세 ~ 만 5세 영유아(소득무관)
  - 지원내용 : 연령별 보육료 정부지원단가

### ○ 장애아 무상 보육료

- ▶ 지원대상 : 만 0세 ~ 만 12세 미취학 장애아
  - 장애인 복지카드(등록증)을 소지한 미취학 장애아동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만 3~5세 아동이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결과 통지서를 제출한 경우
  - 취학연령이 되었음에도 부득이하게 취학하지 못한 장애아동은 담당자가 취학 유예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결과 통지서를 제출한 자의 경우 만8세까지 지원 가능
  - 장애인복지카드 또는 특수교육 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를 미소지한 만 5세 이하 장애아도 의사의 장애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지원
    - 재원아동 : 매년 1, 2월중에 2개월이내 발급 받은 진단서를 주민등록지 구청에 제출(가족행복과)
    - 신규아동 : 신청일전 2개월내 발급 받은 진단서 제출 시 2022년 2월까지 지원
    - 진단기관은 장애인 등록사업 안내의 「장애진단기관(의료기관) 및 전문의 등」의 기준에 한정
  - 휴학 장애아는 만 6세~12세까지, 특수교육대상자 진단·결과 통지서를 제출한 경우 만 6세 이상 만 8세까지 지원
- ▶ 선정기준 : 보호자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지원
  - 구비서류 : 장애인복지카드 또는 장애진단서 구비,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
- ▶ 지원단가
  - 교사대 아동비율 준수, 장애아 전담 또는 특수교사 별도 배치 : 월 502천원
  - 교사대 아동비율 미준수, 장애아 전담 또는 특수교사 미배치 : 해당 반별 보육료 상한액

### ○ 다문화가정 보육료

- ▶ 지원대상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 자녀 중 초등 학교 취학 전 만 0세 ~ 만 5세아
  - 다문화가족의 전처 또는 전남편과의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의 경우, 다문화 가족과 동일 세대원으로 생계를 같이하면 지원(단, 대한민국 국적)
  - 가족관계는 행복e음을 통해 확인하며, 확인이 불가한 경우 신청인의 증빙서류(혼인관계증명서 등) 제출
- ▶ 선정기준 : 보호자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지원
- ▶ 지원단가 : 연령별 보육료 정부지원단가 100%(무상보육)
- ▶ 신청절차 : 신청(보호자) → 결정(구·군) → 통보(구·군)

### ○ 가정양육수당

- ▶ 지원대상 : 유치원, 어린이집,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만0세~만5세 아동
  - 12개월 미만 : 200천원
  - 24개월 미만 : 150천원
  - 36개월 미만 : 100천원
  - 만3세(2017년생) : 100천원
  - 만4세(2016년생) : 100천원
  - 만5세(2015년생) : 100천원
- ▶ 신청절차 : 신청(보호자) → 결정(구·군) → 통보(구·군)
- ▶ 수당지급 : 지원대상 아동 또는 아동보호자 계좌입금
  - 거주지 변경시 : 전입일 15일기준  
(15일 이전-신거주지/16일 이후-구거주지)
  -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자격변경이 속한 달까지 지급
  - 동일 월에 보육료와 양육수당 병급 불가
- ▶ 지급일자 : 매월 25일(토·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

### ○ 장애아동 가정양육 수당

- ▶ 지원대상 : 유치원·어린이집 미이용 취학전 만5세 이하 등록장애 아동(소득수준, 장애등급, 장애유형 무관)
- ▶ 지원단가 : 36개월 미만 20만원, 36개월~만5세 취학전 10만원
- ▶ 신청절차 : 신청(보호자) → 결정(구·군) → 통보(구·군)
- ▶ 수당지급 : 지원대상 아동 또는 아동보호자 계좌입금
  - 거주지 변경시 : 전입일 15일 기준(15일 이전 - 신거주지 / 16일 이후 - 구거주지)
  -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자격변경이 속한 달까지 지급
  - 동일 월에 보육료와 양육수당 병급 불가
- ▶ 지급일자 : 매월 25일(토·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

### ○ 신청 및 문의처

- ▶ 신청접수 : 아동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 ▶ 문의처 :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수영구 가족행복과(610-4326)



**출산장려정책**

○ 출산장려금지급

- ▶ 지원대상 :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둘째 이후 출산 가정
  1. 출산일 기준으로 부모 모두 수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
  2. 출산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 중 한 사람이 현재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부 또는 모가 외국인인 경우
    - 나. 한부모가족인 경우
    - 다. 부 또는 모가 직업 등의 사유로 부산광역시 외 다른 시·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
- ▶ 지원금액
  - 둘째 : 100만원(월20만원\*5회), 셋째 : 200만원(월40만원\*5회), 넷째이후 : 300만원(월50만원\*6회)
- ▶ 신청시기 :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 ▶ 신청장소 :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 출산지원금 지급

- ▶ 지원대상 : 출생신고일 현재 부·모 중 1인 이상 부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중인 둘째이후자녀 출산 가정
- ▶ 지원금액
  - 둘째 : 1회 50만원(30,20만원 2회 지급)
  - 셋째 이후 : 150만원(30,20,10만원×10회, 1년간지급)
- ▶ 신청시기 : 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 ▶ 신청장소 :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 출산용품 지원

- ▶ 지원대상 : 부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출생아가정
- ▶ 지원내용 : 택 1
  - 출산축하용품7종 세트 :
    - 1세트- 디지털귀체온계, 샴푸·바디워시, 아기로션, 딸랑이세트, 내의, 목욕타월, 턱받이
    - 2세트- 아기수면조끼, 아기담요, 방수요, 샴푸, 바디워시, 유아로션, 면기저귀세트, 짱구 목베개
- ▶ 신청시기 : 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 ▶ 신청장소 :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 셋째이상 출생아 건강보험가입 지원

- ▶ 지원대상 : 2014~2016년 출산(입양)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와 함께 수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셋째이후 출생아, 12개월 이하 입양아
- ▶ 지원기준 : 1인당 월2만원 이하, 지원기간 5년
- ▶ 보험유형 : 순수보장형(만기 소멸성)
- ▶ 지원절차 : 동행복센터 접수(지원대상 여부확인) ⇒ 구 전달(검토) ⇒ 보험사 통보(보험가입에 따른 안내)
- ▶ 신청시기 : 출생·입양신고일로부터 90일 이내
- ▶ 신청장소 :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 저소득주민출산특별장려금 지급

- ▶ 지원대상
  - 우리구에 주소를 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교육급여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출산자, 사산자(해산급여 미수급자)
- ▶ 지급금액 : 1인당 30만원(1회)
- ▶ 신청 : 거주지 동에 신청 ⇒ 구 전달 ⇒ 신청인 계좌입금(구)
- ▶ 구비서류 : 신청서, 신분증, 통장사본, 사산의 경우 사산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진단서

○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지급

- ▶ 지원대상 : 입학일 현재 부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초등학교 최초 입학 둘째 이후 자녀
- ▶ 지원금액 : 취학아동 1인당 20만원(1회 지급)
- ▶ 신청시기 : 2021.3.2. ~ 2021.6.30.
- ▶ 신청장소 :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 ○ 가족사랑카드 발급

- ▶ 대 상 : 부산시 다자녀가정의 14세이상 세대원

#### 다자녀가정 정의

- 부산시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 제1조의2  
: 부산시에 주소를 둔 세자녀 이상의 가정(자녀 중 한명 이상이 19세미만인 경우)
- ▶ 내 용 : 다자녀가정 혜택 적용을 위한 신분확인용 카드
- ▶ 유효기간 : 막내 자녀가 만18세까지(만19세 생일 전날로 기재됨)
- ▶ 신 청 : 동 행정복지센터
  - \* 모바일 가족사랑카드 : 휴대폰 구글플레이 또는 앱스토어에서 비패스(BPASS) 앱 설치 후 발급

### ○ 다자녀가정 차량스티커 발급

- ▶ 대 상 : 「가족사랑카드」에 등재된 자의 소유 차량
  - \* 승용차, 승차정원 12인 이하 승합차, 적재량 1톤이하 소형화물차(비사업용)
- ▶ 내 용 : 광안대교 통행료 면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50%할인
- ▶ 유효기간 : 막내 자녀가 만18세까지(만19세 생일 전날로 기재됨)
- ▶ 발급매수 : 세대별 해당차량당 1매
  - \* 통행료 및 공영주차장 할인(면제)시 유의사항 : 반드시「다자녀가정우대 차량스티커」 부착, 가족사랑카드 소지

### ○ 신한 가족사랑카드(신용/체크) 발급 ▶ 후불제 교통카드

- ▶ 대상 : 가족사랑카드 발급 대상 중 19세 이상 세대원
- ▶ 내용 : 가족사랑카드 기능 + 후불교통기능+ 카드사 연계 혜택 (신한카드 홈페이지 참고)
- ▶ 신청 : 전용 ARS(080-700-2108), 신한카드 홈페이지
  - \* 카드사 페이 및 핸드폰 등록 사용 시 도시철도 50% 할인혜택 미적용 (실물카드 직접 사용)

### ○ 다자녀 가정 우대

- ▶ 광안대교 통행료 면제 : 가족사랑카드 소지, 소유차량을 등록하여 다자녀가정 차량스티커 부착 차량
- ▶ 공영주차장 50% 감면 : 가족사랑카드 소지, 소유차량을 등록하여 다자녀가정 차량스티커 부착 차량
- ▶ 도시철도 요금(성인기준) 50% 감면 : 가족사랑카드 소지자
- ▶ 육아종합지원센터 : 이용료 면제
- ▶ 부산광역시 체육회관 및 체육시설 : 사용료 50% 감면
- ▶ 부산광역시 청소년 수련관(양정, 금곡, 함지골, 금정) : 이용료 50% 감면
- ▶ 부산광역시 금련산 청소년 수련원 : 이용료 면제
- ▶ 여성회관 및 여성문화회관 : 교육강좌 우선접수 및 수강료 면제
- ▶ 낙동강 생태공원 : 체육시설 사용료 50% 감면
- ▶ 시립미술관, 현대미술관 : 관람료 면제
- ▶ 백스코 : 주차요금 50% 감면
- ▶ 부산문화회관 : 기획공연 예매시 10% ~ 60% 할인

#### ※ 이용 전 해당기관 문의

- 상수도 요금 감면 :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만18세 미만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 월 가정용 1단계 사용량 10톤에 해당하는 상수도 요금(월 7,200원 상당 감면)
- 글로벌빌리지 수강료 할인 : 자녀 2명 이상 동시수강시 5~50% 할인
- 대학교 등록금 등 지원
  - 대 상 : '89.1.1.이후 출생자인 다자녀 가구 대학생으로서 성적기준 충족자, 소득 8분위(구간) 이하, 다자녀가구의 모든 자녀에게 지원
  - 지원범위 : 등록금 필수경비(입학금, 수업료) 범위 내 연간 최대 520만원
  - 신청방법 : 대상자 본인(인증서)이 홈페이지 또는 ARS(☎1599-2000) 신청
  - 문 의 : 한국장학재단(www.kosaf.go.kr, ☎1599-2000)
- 다자녀가정 자동차 취득세 감면
  - 18세미만의 자녀3명 이상을 양육하는 가정/ 먼저 감면 신청하는 자동차 1대
- 전기요금 감면 : 세대별 주민등록상 자녀 또는 손자녀가 3자녀 이상 가구 월30%할인 (최대16천원)
- 도시가스요금 감면 : 세대별 주민등록상 자녀 또는 손자녀가 3자녀 이상 가구
-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 2008.1.1.일 이후 둘째이상 자녀를 출산한 국민연금 가입자, 자녀의 수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 산입
- 다자녀가정주거안정지원 : 주택특별공급, 주택구입·전세자금 대출 지원/ LH공사, 부산 도시공사
- 공영주차장 50% 할인 : 만개자녀 만15세 미만의 2자녀 이상 가구
- KTX 다자녀 행복할인 : 코레일멤버십 회원 중 만25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을 둔 회원
- 궁·능 무료입장 : 막내자녀가 만13세이하인 2자녀 이상 가정, 부모 무료입장
- 국립수목원 관람료 면제 : 막내자녀 만12세 미만인 3자녀 이상 가정
- 어린이집 우선입소 : 3자녀이상 가정의 어린이집 입소신청 시 입소순위 추가점수 부여
- 참여업체별 확인 : www.busan.go.kr/childcare ▶ 임신출산 OK - 다자녀가정지원





### ○ 임신부 등록관리 및 철분제 제공

- ▶ 지원대상 : 관내 임신부
- ▶ 지원기간 : 연중
- ▶ 지원내용
  - 임신초기검사(혈액검사, 소변검사)
  - 풍진항체검사(가임기 여성 및 임신부)
  - 임신 12주 이내 관내 임신부에게 엽산제 2개월분 지급
  - 임신 16주 이상 관내 임신부에게 분만 전까지 철분제 5개월분 지급
  - 임신 24~28주 임신성당뇨검사
- ▶ 문의처 : 수영구 보건소(610-5604)

### ○ 임신부 건강교실

- ▶ 지원대상 : 관내 임신부
- ▶ 내용
  - 임신·출산의 과정, 태교·육아에 관한 종합정보 제공
  - 1년 4기 운영(1기당 4회 교육)
- ▶ 신청 : 수영구 보건소(610-5604)



### ○ 아이돌봄지원사업

- ▶ 아이돌봄서비스 내용
  - 한부모 맞벌이 등 취업부모의 만 12세 이하 자녀의 집에서 아이돌보미가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이용요금은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지원
- ▶ 이용대상 및 시간
  - 시간제 돌봄 : 만 3개월 이상~만 12세 이하 아동
    - 정부지원 시간은 연간 840시간 이내(1회 2시간 이상 사용 원칙)
  - 영아종일제 돌봄 : 만 3개월 이상 ~ 만 36개월 이하 영아
    - 정부지원 시간은 월 60~200시간 이하(일 최소3시간 이상 사용 원칙)
  - 정부지원 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전액 본인부담으로 서비스 이용 가능
- ▶ 이용방법
  - 정부지원 가구(영아종일제 및 시간제 가, 나, 다형)
    - 동 행복센터에 정부지원 신청 및 유형 결정 후 서비스제공기관(수영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서비스 연계 신청
    - ※ 단, 복지포(www.bokjiro.go.kr)를 통한 신청은 맞벌이부부(직장보험 가입자) 및 한부모 가족지원법에 의해 등록된 한부모가구(직장보험 가입자)만 공인인증서를 통해 신청가능
  - 정부미지원(본인부담) 가정
    - 아이돌봄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서비스제공기관에 직접 신청
    - \* 정부미지원(본인부담) 유형 : ① 시간제 “라”형 ② 영아종일제 “라”형
- ※ 서비스 신청은 아이돌봄 홈페이지(idolbom.go.kr) 이용  
(문의 : 대표전화 1577-2514, 수영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758-6187)
- ▶ 소득 유형별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2021년도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표>

유형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영아종일제 (시간당 10,040원, 36개월)		시간제(시간당 10,040원, 0~12세)			
		정부지원	본인부담	A형		B형	
				정부지원	본인부담	정부지원	본인부담
가형	75%이하	8,534원 (85%)	1,506원 (15%)	8,534원 (85%)	1,506원 (15%)	7,530원 (75%)	2,510원 (25%)
나형	120% 이하	6,024원 (60%)	4,016원 (40%)	6,024원 (60%)	4,016원 (40%)	2,008원 (20%)	8,032원 (80%)
다형	150% 이하	1,506원 (15%)	8,534원 (85%)	1,506원 (15%)	8,534원 (85%)	1,506원 (15%)	8,534원 (85%)
라형	150% 초과		10,040원		10,040원	-	10,040원

\* 시간제 A형 미취학아동, B형 취학아동



##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 ○ 선정기준

- ▶ 모 또는 부와 만18세 미만의 자녀(대학진학시 만 22세 미만, 군복무후 취학시 병역 의무 이행기간 가산한 연령 만 25세미만)로 이루어진 아래 내용을 충족하는 가정
  -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된 자
  -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인하여 장기간 근로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자
  - 미혼모, 미혼부, 배우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자
  - 배우자 또는 배우자 가족과의 불화 등으로 인하여 가출한 자
  - 배우자의 장기복역 등으로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
  -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중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여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자
  - 부모로부터 사실상 부양을 받지 못하는 아동과 그 아동을 양육하는 (외)조부 또는 (외)조모(저소득 조손가족)

### <2021년도 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대상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단위: 원/월)

구분	2인	3인	4인	5인	6인	
2021년 기준 중위소득	3,088,079	3,983,950	4,876,290	5,757,373	6,628,603	
한부모 및 조손가족	기준 중위소득 52%	1,605,801	2,071,654	2,535,671	2,993,834	3,446,874
	기준 중위소득 60%	1,852,847	2,390,370	2,925,774	3,454,424	3,977,162
청소년 한부모가족	기준 중위소득 60%	1,852,847	2,390,370	2,925,774	3,454,424	3,977,162
	기준 중위소득 72%	2,223,417	2,868,444	3,510,929	4,145,309	4,772,594

### ○ 지원내용

- ▶ 자녀학비 : 고등학생 입학금 및 수업료 20% 지원, (3, 6, 9, 12월 말 학교 계좌로 지급) 80%는 교육청 부담(초중고 교육비 지원)
- ▶ 자녀양육비 : 18세 미만 아동에게 1인당 월 20만원
- ▶ 추가아동양육비 : 조손가족 및 만 25세 이상 미혼 한부모 가정 중 5세 이하 아동에게 월 5만원 지원
- ※ '2021. 5월부터 생계급여 수급자 가구 지원
  - 한부모가족 아동 양육비 : 월 10만원 지원
  - 청소년한부모가족 아동 양육비 : 월 15만원 지원

### ▶ 자녀교통비

- 지원대상 : 학생이 아닌 만나이 18세이하 중·고등학생(비대학생 포함)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시설수급자 제외
  - 중학교 입학생은 3월부터 지급, 고교 졸업예정자는 12월까지 지급
- 지원 금액 : 1일 1,600원(800원 × 2회), 연 240일 (방학기간인 1, 8월 제외)
- 지원시기 : 2월은 2월분, 3월은 3~4월분, 5월은 5~7월분, 9월은 9~10월분, 11월은 11~12월분 지급

- ▶ 자녀 학용품비 : 중·고등학생 → 연 8.3만원 지원(국민기초교육급여, 긴급복지 교육비 수급자 제외)  
 초 등 학 생 → 상·하반기 4, 9월 25천원 지원(생계, 의료급여, 시설수급자 제외)

### ▶ 질병치료비

- 2021. 1월~12월 중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의료비 영수증에 기재된 질병치료비의 본인부담금 1건 300천원 이상인 경우 가구당 1,000천원 한도 내에서 지원
  - 실질적인 질병 치료비에 한해 지원(검사비, 의료 보조기구 구입 등 제외)
  - 생계·의료 수급자, 시설수급자 제외
- 신청기한 : 의료기관 의료비 청구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신청장소 : 거주지 동행정복지센터

### ▶ 부자가족 주거지원

- 지원기간 : 2년 원칙, 단 2년 단위로 2회 연장 가능(최장 6년)
- 지원대상 : 2인 가족이상 무주택 저소득 부자가족
  -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제외
- 지원내용
  - 임대주택의 임차보증금 및 월 임차료 지원
  - 공과금 등 주택 사용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



##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 방문건강관리사업

구분	소아 암환자	성인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보험가입자 (국가암검진 수검자)	폐암환자
신청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건강보험가입자 : 소득재산조사</li> <li>의료급여수급권자 : 당연 선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당연 선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가암검진 수검자</li> <li>1월 건강보험료 적합자 (검진연도 제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건강보험가입자 : 1월 건강보험료 고지액 적합자</li> <li>의료급여수급권자 : 당연선정</li> </ul>
지원 암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체 암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체 암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위암, 대장암, 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원발성 폐암 (C33-C34)</li> <li>폐암은 검진 관계없이 건강보험료 기준</li> </ul>
지원 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이·재발암 포함 *기존 등록자 제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이·재발암 포함 *기존 등록자 제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이·재발암 포함 *기존 등록자 제외 *국가암검진 진단 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이·재발암 포함 *기존 등록자 제외</li> </ul>
지원 금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최대 만18세 까지 * 신청기준 만18세 미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연속 최대 3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연속 최대 3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연속 최대 3년</li> </ul>
지원 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백혈병 : 3,000만원</li> <li>백혈병 이외 : 2,000만원 (조혈모세포 이식 시 3,000만원)</li> <li>* 본인일부부담금·비급여 본인부담금 구분 없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본인일부부담금 : 최대120만원</li> <li>비급여본인부담금 : 최대100만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본인일부부담금 : 최대200만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건강보험가입자 : 본인일부부담금 최대200만원</li> <li>의료급여수급권자 : 본인일부부담금 최대 120만원, 비급여본인부담금 최대100만원</li> </ul>

### ○ 신청

- ▶ 장 소 : 수영구 보건소
- ▶ 기 간 : 연중 수시 접수
- ▶ 구비서류
  - 공 통 : 진단서, 진료비 영수증, 입금통장사본(본인명)
  - 필요시 : 암 검진 결과통보서,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전문의 소견서
- ▶ 문 의 처 : 수영구 보건소(610-5617, 5649)

- ▶ 지원대상 : 건강관리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사회·문화·경제적 건강취약계층 및 65세 이상 독거노인 가구, 75세 이상 노인부부 가구 중심
  - 1순위 : 기초생활수급권자
  - 2순위 : 차상위계층
  - 3순위 : 1, 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독거노인 등
  - 4순위 : 지역아동센터(빈곤아동), 미인가시설, 보건소 내·외 자원연계 등
- ▶ 지원내용 : 건강문제 스크리닝,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 보건소 내·외 자원연계 등
- ▶ 지원방법 : 방문간호사가 담당지역을 정해 정기적 방문 관리
  - \* 방문관리팀 ⇄ 보건소 담당자, 동 전담 방문간호사
- ▶ 문 의 처 : 수영구 보건소(610-5624)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보건사업

### ○ 지원대상

- ▶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의 출산가정

가구원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임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직장+지역]
2인	128,342	117,560	129,761
3인	165,968	168,444	168,195
4인	203,558	216,474	206,575
5인	237,681	259,446	242,008
6인	278,094	309,041	286,737
7인	321,769	356,168	337,302
8인	354,781	393,994	380,152

### ○ 지원내용

- ▶ 서비스 이용 바우처 : 산모 및 신생아 관리를 위한 가정방문 도우미 이용 바우처카드
- ▶ 지원내용 : 산모 영양관리, 유방관리, 산후체조, 산모·신생아 돌보기 등
- ▶ 지원기간(표준기준) : 첫째아 2주(10일), 둘째아 3주(15일), 셋째아 이상 3주(15일)
- ▶ 신청기간 : 연중 수시 →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후 30일까지 신청가능
- ▶ 제외대상 :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입양특례법 제13조 및 제33조)사업 사업에 따른 지원을 받은 자

### ○ 신청

- ▶ 거주지 보건소
- ▶ 구비서류 : 산모신분증, 산모수첩
- ▶ 문의처 : 수영구 보건소(610-5646)

### ○ 금연클리닉 사업

- ▶ 사업기간 : 연중
- ▶ 사업대상 : 금연을 희망하는 지역주민
- ▶ 사업내용 : 금연상담, 금연보조제 지급
- ▶ 사업방법 : 방문상담
- ▶ 문의처 : 수영구 보건소(610-5612, 5628, 5698)

### ○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 ▶ 사업기간 : 연중
- ▶ 사업대상 : 만12세 이하 아동 (2007.01.01. 이후 출생자)
- ▶ 사업내용 : 국가예방접종 전액 지원 (피내용BCG, A형간염, B형간염, DPT, 소아마비, MMR, 수두, Hib, Tdap/Td, DTaP-IPV, DTaP-IPV/Hib, 일본뇌염, 폐렴구균, 독감, 사람유두종바이러스)
- ▶ 접종장소 : 전국의 보건소 및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도우미사이트에서 확인 가능)
- ▶ 구비서류 : 모자보건수첩 또는 아기수첩, 보호자 신분증
- ▶ 문의처 : 수영구 보건소(610-5652~3)

### ○ 난청노인 보청기 지원

- ▶ 사업기간 : 5월 ~ 8월
- ▶ 사업대상 : 노인성 난청이 있는 어르신 10명 내외
- ▶ 사업방법 : 취약계층 난청노인 선별 → 1차 청력검사 실시 → 지원대상자 선정 → 보청기지원 → 2~3개월 후 만족도 조사 등 사후관리
- ▶ 문의처 : 수영구 보건소(610-5644)

### ○ 치매안심센터 운영

- ▶ 사업기간 : 연중
- ▶ 사업대상 : 관내 지역주민, 치매환자 및 치매가족
- ▶ 지원내용 : 치매상담 및 조기검진, 맞춤형 사례관리, 치매환자쉼터 및 가족카페 운영, 치매예방교실 및 인지강화교실 운영, 배회가능 어르신 인식표 발급, 조호물품 제공,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치매공공후견사업 연계 등



### ○ 영양플러스사업

- ▶ 사업기간 : 연중 (상·하반기)
- ▶ 사업대상 : 기준중위소득의 80% 이하(건강보험료 기준)인 66개월 미만의 영유아 및 임신·출산·수유부 중 영양위험요인(저체중, 빈혈 등)이 있는 수영구 주민
- ▶ 지원내용 : 영양교육(단체, 개별, 가정방문상담), 보충영양식품 제공
- ▶ 문의처 : 수영구 보건소(610-5646)

### ○ 어르신 폐렴구균 예방접종 사업

- ▶ 사업기간 : 연중
- ▶ 사업대상 : 65세 이상(1955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노인
- ▶ 장 소 : 전국의 보건소 예방접종실
- ▶ 지원내용 : 폐렴구균 23가 다당질 백신(PPSV 23가) 1회 접종 지원 (65세 이상 연령 때 이미 접종하신 분은 접종 불필요)
- ▶ 준 비 물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 문의처 : 수영구 보건소(610-5652~3)

### ○ 노인 치과주치의 사업

구분	노인·장애인 의치보철지원사업	노인 구강건강관리사업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만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li> <li>•만 50세~64세 이하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 개인의원 진료가능한 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만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li> </ul>
기간	•4월~12월	•5월~12월
장소	•수영구 관내 치과의료기관에서 시술	•수영구보건소 3층 구강보건실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부익치 및 부분익치(지대치 포함) 시술 비용 지원</li> <li>※ 건강보험 적용 후 본인부담금 지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구강검진, 구강보건교육, 스케일링, 불소도포 등</li> </ul>
신청	•수영구 보건소 구강보건실(610-5654)	

### ○ 아동치과 주치의 사업

- ▶ 사업기간 : 4월 ~ 12월
- ▶ 사업대상 : 관내 초등학교 5학년 및 지역아동센터 아동
- ▶ 지원내용 : 구강위생관리, 불소도포, 치아홈메우기, 치석제거, 충치치료비 (지역아동센터 아동만 해당)
- ▶ 문의처 : 수영구 보건소 구강보건실(610-5654)

### ○ 수영구 마을건강센터

- ▶ 사업기간 : 연 중
- ▶ 위 치 : 민락동,광안1·2동,망미2동 행정복지센터 2층 마을건강센터
- ▶ 사업목적 : 지역주민 건강증진 도모를 위해 기존의 구 단위 보건소 사업에서 접근성을 높인 동 단위 마을건강센터를 운영함으로써, 보건의료서비스 수혜율 향상 도모
- ▶ 사업대상 : 수영구 지역주민
- ▶ 사업내용 :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체지방, 스트레스 등 검사 후 1:1 측정  
→ 건강상담마을주민 건강요구도 조하, 건강프로그램 운영, 건강소모임 운영 등
- ▶ 문의처 : 민락동 마을건강센터(610-6091~3)  
광안1동 마을건강센터(610-6053~5)  
광안2동 마을건강센터(610-6063~5)  
망미2동 마을건강센터(610-5948~9)

### ○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

- ▶ 사업기간 : 2021.1.~12. 31. (※예산 소진 시 종료)
- ▶ 사업대상 : 의료급여수급자 또는 전국가구 중위소득의 80% 이하인 주민등록 주소지 기준 수영구 주민
- ▶ 신청서류 : 신분증, 소득증빙서류, 개인정보동의서, 의료기관용 서류(보건소 홈페이지 참조)
- ▶ 방법 : 방문, 접수 → 수영구정신건강복지센터(☎ 714-5681)
- ▶ 내용 : 발병 초기 집중적인 치료를 유도하고, 응급상황 입·퇴원 후에도 외래에서 꾸준한 치료를 받도록 사례관리 및 저소득층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구분	이용대상	소득기준	지원범위
응급입원 치료비	응급입원(「정신건강복지법」 제50조)으로 입원한 자	소득기준 무관 (의료급여수급자, 건강보험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치료비 본인 일부부담금</li> <li>• 전액 본인부담인 비급여 본인부담금(상급병실료, 투약 및 조제료, 제증명료 등은 지원 불가 - 의료급여수급자와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는 비급여 지원 가능)</li> </ul>
행정입원 치료비	행정입원(「정신건강복지법」 제44조)으로 입원한 자		
발병초기 정신질환 치료비	조현병으로 진단받은 후 5년 이내인 자	의료급여수급자, 전국가구 중위소득 80% 이하인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신과 외래치료비 본인일부부담금(검사비, 치료비, 약제비, 제증명료 등)</li> </ul>
외래치료 지원 치료비	외래치료지원(「정신건강복지법」 제64조) 결정자		

▶ 문의 : 정신건강계(☎610-4852), 수영구정신건강복지센터(☎714-5681)



## 복지시설 및 사업안내

- 수영구노인복지관 \_124
- 동산원 \_149
- 광안노인복지관 \_127
- (사)부산시 수영구장애인협회 \_152
- 상락정배산실버빌 \_130
- 수영구 장애인복지관 \_154
- 성분도어버이집 \_132
- 컴넷하우스 \_156
- 남천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_134
- 수영구보건소 \_159
- 수영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_136
- 부산종합사회복지관 \_167
- 수영구 육아종합지원센터 \_138
- 홀트수영종합사회복지관 \_169
- 수영구드림스타트센터 \_140
- 수영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 지원센터 \_171
- 수영구청소년문화의집 \_142
- 부산수영지역자활센터 \_174
- 수영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_145
- 수영구자원봉사센터 \_178
- 수영구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_147

